

장애해방을 위한 힘찬 결의!

제5기 장애인청년학교 집중수련회 및 수료식

우리는 지금 보다 더 강하게 !!

[주최] 서울DPI |기간| 2005년 7월 1일(금)~3일(일) |장소| 송추연수원

날짜	구분	내용	진행	장소
7/1	준비마당	<수련회 OT>	정지영(서울DPI 사무국장)	4층연회장
	제9강	장애인운동사	전정식(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소 소장)	4층연회장
	열린마당	도전! 청년학교 골든벨과리	강지숙(장애인청년학교 교육선전팀)	대강당
	심야영상상영	6개의 시선		대강당
7/2	제10강	장애인 법안투쟁의 의미	김대성(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실장)	대강당
	제11강	일본 장애인운동과 현안	미사와 류(일본DPI 의장)	대강당
	지지그룹만들기	지지그룹만들기 1 (설명 및 그룹나누기)	고관철(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합회 대표)	대강당
		지지그룹만들기2 (그룹별 저녁식사 후 대본작성 및 연습)		
지지그룹만들기3 (그룹별 역할극)				
캠프파이어	뒤틀린 - 기장선출	정종남(서울DPI 조직국장)	운동장(우천시대강당)	
7/3	결의마당	5기청년학교평가	정지영(서울DPI 사무국장)	대강당
		<수료식>	정종남(서울DPI 조직국장)	

[5기기자] 박정엽 |MVP| 박계형 |눈빛상| 이선희 |포토제닉| 박경미·심유경 |활동보조| 김태형 |모듬상| 3모듬 |골든징| 양효정|개리| 구자윤·권영대·김경희·김승겸·박계형·박철환·선민수·신소희·이은정·이하용·임민철·정수기·최주현 |수료| 공소규·구자윤·권민진·권영대·권윤정·김 선·김경희·김명기·김미숙·김선자·김성오·김승겸·김윤섭·김태균·김형태·박경미·박계형·박용현·박정엽·박지영·박철환·사재광·선민수·송재영·신소희·심유경·안성숙·양효정·엄선용·엄윤경·오숙희·이강천·이경숙·이선희·이은정·이종욱·이종희·이하용·이환희·임민철·전재형·정수기·정주현·정초근·정현지·최윤희·최주현·함명숙·홍점표·황정순

이념과 행동의 전환점을 제시하는 장애인청년학교,

이제 우리는 삶의 반전을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전통적 장애인복지에 대한 개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장애라는 문제점을 유지시키며 재생산해내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인권철학은 장애인이 사회 모든 영역에 참여할 권리의 바탕으로, 복지를 넘어 인권의 시각으로 장애인문제를 풀어어나가는 것은 사회전역의 시대적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과 결정에 장애인의 경험과 요구는 배제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청년학교는 장애인운동을 변화시켜나갈 청년장애인들의 열린 마당이고자 했습니다.

장애인청년학교는 장애유형간장애인당사자그룹과 전문가그룹간시민사회인권운동단체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장애' 라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내고, 각자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그 해결점을 풀기위한 협력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장애인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장애인운동을 펼쳐나갈 장애인당사자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장애인의 인권과 당사자주의를 전파하여 장애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인권의 관점으로 장애인운동의 기본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청년학교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긍정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실천적 활동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사람과 사람의 끈을 엮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장애인단체, 복지관, 관련학과 등 다양한 자리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해 나갈 주체가 될 수강생들로 폭넓은 경험을 들을 수 있는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며 진행되어온 삶의 경험과 문제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은 단순히 장애문제를 짧은 관심으로 끝내는 자리가 아닌 서로의 삶을 지켜 낼 수 있는 책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민과 서로에 대한 이해들이 생각으로서만 머물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켜 내려는 힘으로 분출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심화시키고 앞으로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통해 서로를 단련시켜나가야 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장애인 차별에 맞서 싸울 우리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장애인 청년학교에서는 장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효과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청년학교는 앞으로도 장애문제를 바른 시각으로 알려내고, 그 속에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대안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실상 장애인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기에 그 어느 해 보다도 뜨거운 가슴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두 달간의 짧은 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운동에 역할을 가진 자리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만들고 진행하는 저희들에게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속해있는 우리들이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일궈낼 수 있는가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두 달간의 기간 그리고 앞으로 있을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세우고 결의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진의 추억



한국장애인운동사

제9강



전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소 소장
nutland@hanmail.net

한국장애인운동사^①

전 정 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소 소장]

맹인 연주단과 자살

‘운동’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다. 스포츠도 운동이다. 하지만 사회운동론에서 말하는 운동(movement)은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는 기존 질서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려는 집합적 행위를 일컫는다.^② 그런데 저기 창 밖에서 있는 나무의 가지가 흔들리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듯이 운동에도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운동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왜 운동을 하게 되는 걸까? 사람은 불만이 있을 때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운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고 힘든 운동이란 걸 하진 않는다. 운동은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니까.

장애인이라면 예외 없이 힘든 삶을 살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로 갈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이 가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③ 예를 하나 들어보자. 조선시대 세종이라는 군주가 있었다.

① 이 글은 여러 제한점을 지닌다. 우선 이 글이 다루는 바는 장애운동사가 아닌 장애인운동사이다. 장애와 관련된 모든 단체나 집단의 활동사를 담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 사회의 운동 역사를 기술코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글은 장애인 사회의 여러 입장들을 고루 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장애영역별 집단과 단체의 운동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전장협까지의 역사가 주를 이루고 이후에는 자립생활 운동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것이 매우 영성한 설계임은 자명하다. 이는 전적으로 연구자 본인의 연구역량 미비와 연구세월의 짧음에 기인한다.

② 블루머는 사회운동을 새로운 생활 질서를 세우려는 집합적 행위라고 본다. Blumer, H. 1988. "집합행동이란 무엇인가". 김영정 (번).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현암사. p.62

③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나 이문열의 소설 [아가]에서 보듯이, 실상 장애인의 삶이 사회와 유리되고 동물적 감금의 삶으로 전환된 것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에 결박된 씨족주의적 생활형태에서 장애인은 소규모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나름의 사회적 역할을 맡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노동력이 생산수단과 괴리된 채 자본에 판매되는 형태로 살아야 하는, 그리고 자본의 명령에 따라 잦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뿐만 아니라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이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비인간적인 격리의 삶을 강요받게

우리는 그를 한글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면에는 장애인들의 노동권에도 신경 쓴 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는 ‘맹인연주단’이라는 제도를 두었는데 그 제도의 기능은 이러했다. 왕이 연회를 베풀 때 보통 여자 궁인들이 춤은 물론이거니와 연주도 담당했는데 그들 중 연주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 연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 그때 이 맹인연주단을 불러 연주하게 했다. 그것은 그들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왕의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④ 그런데 왕 앞에서의 연주는 다른 연주보다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기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사회 내에서 연주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아무튼 그 당시 맹인들의 삶이 이들 맹인연주단의 삶과 유사했다면 그들에게서 사회에 대한 불만은 적었을 것이고 그래서 운동할 이유도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몇 백 년이 흐른 1974년에 맹인들이 일제히 분노하며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시각장애인한테만 허용된 직업이었던 안마와 침술에 대해 국가가 그 독점권을 폐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용히 있던 시각장애인들이 뭉쳐서 싸우게 된다. 왜 그랬을까? 바로 불만과 분노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74년에 있었던 맹인들의 투쟁이 한국장애인운동사에서 의미 있는 운동의 역사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⑤ 그렇다면 그건 왜 그럴까? 운동의 조건에는 불만과 분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조건이 있다. 불만과 분노가 분명 운동의 필수조건이긴 하지만^⑥ 정작 운동을 일으키고 진정으로 운동을 운동답게 만드는 충분조건들이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조직과 지속성 그리고 이념이다. 운동이 운동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일 때만이 가능하다. 특히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이해, 또는 이념의 추구가 있어야 한다. 보통 사회학적으로 사회운동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이해 혹은 이념

된다.

④ 임안수·송영욱. 1997. "장애인복지제도의 변천".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양서원. pp.87-88

⑤ 최동익(2004)의 글에서는 1974년 투쟁을 비롯한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투쟁의 역사가 의미있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그 외의 운동사 연구 글들에서는 아직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않는다. 시각장애인 사회의 투쟁사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 최동익. 2004. "장애인운동의 평가에 대한 재조명", 한국장애인 리더쉽 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pp.57-58.

⑥ 현재의 생활형태에 대한 불만을 블루머는 운동의 동력이라고 부른다.(Blumer, 1988:62)

추구적 집합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⑦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74년 맹인들의 투쟁은 분노를 순간적으로 표출한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긴 하나 운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통 장애인들은 일이 터졌을 때 '이러면 안 된다' 고 한번 분노를 나타낸 다음 다시 시들어져 버리거나, 또는 자기 파괴적인 형태로 반응한다. 1980년대 초반에 김순석이라는 장애인이 비관자살을 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김순석이 바라본 장애인의 현실은 이랬다. 가족의 짐이 되지 않고 자신 스스로 돈을 벌어 장애인으로써 사회에서 살고 싶는데 휠체어를 밀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길을 건널 수 없고 모든 턱이 가로막고 있었다. 미칠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울시장 앞으로 제발 도로 턱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다.^⑧ 이것이 80년대 초반까지 장애인사회의 전형적인 저항형태였다.

운동학습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저항의 모습들이 계속 되다가 드디어 장애인들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집합행동이란 것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우리가 말하는 범죄라는 것, 절도나 사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겁이 많아서 못한다. 그것도 학습, 즉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좀 도둑이었다가 감방에 가게 되면 거기서 선배들에게 온갖 범죄의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그런 식으로

⑦ 한완상은 사회운동을 지속적이며 조직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전략적 집단행동으로 정의한다. (한완상, 한균자, 2000.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307)

⑧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막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하나요?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하나요?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하나요?...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만 들어오면 그냥 지나치는 빈 택시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까짓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 놓았습니다. 시장님 울지로의 도로 턱을 없애주시고 경사지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는 시내 어느 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 한군데라도 마련해 주셨습니까... 장애자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 대우를 받아도 끝내는 이용을 당합니다. 조그마한 꿈이라도 이루려고 애써왔지만 저를 약해지게만 만듭니다." (김순석씨의 유서 일부; 제15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체전 자료집, p.9)

범죄문화를 배우게 되면서 본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⑨ 마찬가지로 운동 또한 집단적 학습을 통해 익혀지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행위이다. 80년대 후반 한국의 장애인들도 사회운동문화를 습득하고 본격적인 장애인운동의 서막을 열게 된다.

일제시대 연약한 지식인의 삶을 그린 '술 권하는 사회' 라는 현진건의 유명한 소설이 있다. 그 소설의 제목을 빌려서 말하면, 한국의 80년대는 '운동 권하는 사회' 였다.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평상시 생활을 하는 종로거리나 서울시내 거리가 완전 최루탄가스로 범벅이 되는 최루가스의 시대였다. 운동도 많았고 그만큼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정권의 정당성 부재가 있었다. 당시의 군사정권은 출발부터 정통성을 결여했고 민주적 사회운영이 불가능했기에 굳이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정의감만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싸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저항은 어렵지 않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회에는, 위험은 했지만 그 위험의 정도에 버금가는, 보편화된 운동문화가 있었다. 특히나 87년도는 우리나라에 노동자 대투쟁과 시민혁명이 있었던 때였다. 바로 그 엄청난 운동의 역사 속에서 장애인들 특히 젊은 장애인들도 운동을 학습한다. 그러면서 장애인문제가 단지 시혜와 동정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다 운동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다.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운동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전지대연 즉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그리고 그 연합회의 중심에 있던 '올림터' 라고 하는 청년동아리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사회와 역사 속에서 여러 운동의 이념과 방법, 문화를 습득하고 운동가가 된다. 지금의 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민간인으로 살고 있다가 노들야학을 다니면서 시위현장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문화를 습득하여 투사가 되는 것처럼.^⑩

⑨ 시카고학파의 범죄문화론과 Sutherland의 차별교섭이론에 대해서는 한완상, 한균자 (2000:291) 참조.

⑩ 전지대연과 올림터의 형성과정, 주체들, 이념적 지향, 활동들에 대해서는 전정식, 2004. "연구노트: 전지대연과 장고법 투쟁". 한국장애인 리더쉽 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pp.69-71 참조.

80년대 청년장애인들은 장애의 운명성을 넘어서는 장애의 사회성에 주목하게 된다. 장애라는 것은 신이 주는 벌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해결할 그런 문제도 아니다. 전쟁, 교통, 산재, 그리고 오염된 먹거리, 미약한 위생 정책 등에서 얻게 된다. 예컨대 수많은 소아마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입은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60년대 관리 소홀로 약효가 사라진 소아마비백신을 배급한 국가 사회 때문이다.¹¹ 즉 장애 문제 원인의 많은 부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를 개성이 아닌 무능이나 불리함으로 보게 만드는 것은 능력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의 구조와 문화이다. 특히 이 당시 청년장애인들은 이윤만능, 능력만능의 자본주의 사회가 장애인을 만든다는 논리를 체화한다.¹²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논리와 80년대 대학생들과 사회생활을 통해 학습한 운동 문화를 접목시켜 80년대 후반, 특히 88년과 89년도에 청년장애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조직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지속적인 그리고 과격한--소위 선도 투적--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 시작이 아마도 88년 장애인올림픽거부투쟁일 것이다. 청년장애인들은 군사정권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는, 무엇보다도 현실의 장애인들의 삶은 뒤로한 채 엄청난 자원이 동원되는 기만적인 장애인올림픽의 거부를 주장하게 된다.¹³ 그다음에는 말로만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의 법 몇 장 복사해 온 그런 법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시도한다. 또한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운동도 강력히 전개한다. 성당도 들어가고 절도 들어가고 교회도 들어가고 당시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야3당 당사를 점거해버리고 목숨을 거는 단식투쟁과 혀 깨무는 혈서까지 모든 합법/비합법 전략 전술을 동원한 운동을 행한다.¹⁴

11) 이회경. 1993. "1960, 70년대의 장애인". 한국의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pp.65-67

12) 80년대말 청년 장애인들이 지닌 장애의 사회성 인식과 장애인운동의 이념적 방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울림터 합설지에 실린 다음의 글들 참조. 정태호. 1987. "한국 사회운동과 장애자운동". 합설 4호; 김동호. 1988. "한국장애자운동론". 합설 6호; 김철득. 1988. "장애해방이란 과연 무엇인가?". 합설 7호; 김한배. 1989.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과 울림터". 합설 8호

13) 김대성. 1996b. "장애인운동의 역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p.50; 최희정. 2003. "치절함으로 차별에 맞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12월호

14) 1988년 장애인올림픽 거부투쟁과 양 법안 쟁취투쟁과정에서의 전지대연과 울림터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 참조. 문희 외. 1993. 울림터 활동기록집. 장애인문제연구소

이 시기 운동은 결과적으로 양대 법안 모두를 쟁취하게 된다. 여기서 '쟁취'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승리 학습을 의미한다. 권력자에게 청원하는 식이나 개인자살 형태 혹은 일시적 형태의 집단적 분노 표출 방식이 아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운동 속에서 목표하는 바가 권리로써 쟁취됨을 체험한 것이다. 바로 이 승리 학습을 경험한 세대들이 이후 20여년 가까이 지나가는 현 시점까지 운동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¹⁵

배고픔

운동의 충분조건은 조직과 이념이다. 전지대연 특히 울림터 출신 청년장애인들은 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전국적 차원의 운동조직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선 서울지역기반의 장애인운동청년연합(장청)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전청)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¹⁶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운동은 조직이 있어야 했지만 선도적인 인자들만 있을 뿐 광범위한 대중은 모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결국 전청에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준비위 단계에 머물고 만다.¹⁷ 그러다가 대중적 토대에서의 갈망 속에서 진보적 청년조직 장청은 '장애인한가족협회' 라는 대중적

회 울림터. pp.51-97; 김용출, 2003. 최옥란 평전-시대를 울린 여자. SEOUL POST. pp.121-132; 이상호. 2003. "한국장애해방운동의 역사". 장애인청년학교 3기 자료집. 한국DPI. p.105

15) 2000년대까지 장애인운동을 이어나온 1980년대 청년장애인운동그룹의 예시적인 면면은 이렇하다. 최옥란(울림터), 정태수(울림터), 이상호(울림터), 김병태(울림터), 박홍수(서울장애인복지관 동아리 싹틔), 박경석(싹틔), 이안중(울림터), 김정영(삼마), 신용호(울림터), 김대성(울림터), 위문숙(울림터), 이석구(울림터)

16) 장애인운동청년연합은 1991년 4월 13일 안국동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창립된다. 이날 회장 김경태, 부회장 김규성, 감사 손복목이 선출된다. 고문에는 박홍수와 윤석용 그리고 자문에는 김종인, 이성재, 장영달, 채종걸, 안희대가 추대된다. (장청련 신문 창간호. 1991.5.25) 그런데 실제 장청련의 길 특히 전국 조직 건설은 쉽지 않았다. 조직결성 사업의 의미와 그 과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김규성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보자. "장청련은 우리 운동이 '허리'가 없다는 판단 아래, '정치적 대중조직'을 표방하며 지난 1년을 보냈지만 하부의 힘을 결집해 내지도 못하였고 상층의 지원도 받아내지 못한채, '한마리 외로운 늑대'의 모습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 다른 늑대들'을 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김규성. 1992. "92년 장애인운동의 전망과 청년의 역할". 장애인운동 청년연합회 정기총회 및 창립 1주년 기념식(1992.4.26) 자료. p.12

17) 1991년 11월 3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전청 준비위 발대식을 가진다. 준비위 위원장과 전국 지역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김규성(위원장), 이안중(서울), 송형범(부산), 조성남(이리), 고현수(제주), 김정수(강원), 송용각(대전), 이현규(대구). (장청련 신문 5호. 1991.12.20)

장애인단체와의 통합을 이룬다.¹⁸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전장협)'라는 조직이다.¹⁹ 그러나 훈련된 상부 리더들 몇 명만 가지고는 조직이라 할 수 없다. 친목 지향의 대중이 아닌 행동력을 가진 그리고 운동 문화를 학습한 조직원들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장협은 이름만 전국적인 조직의 이름을 달았을 뿐 실제적인 조직력은 미약했다.²⁰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 장애인야학(노들야학)을 시작했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견기대회를 조직했으며, 빈민장애인의 생존권 투쟁에 결합했다.²¹ 그러나 이러한 사업과 투쟁들을 통한 조직적 성장의 성과는 적었다.

¹⁸ 청년변혁운동의 주축이었던 장청은 93년 전체 사회운동의 약화 속에서 개인과 조직의 재정문제와 빈약한 대중력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장청은 대중력 확보와 재정문제의 극복 등을 목표로 장한협과 통합하여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로 이행한다. (이상호, 2003. "한국장애해방운동의 역사", 장애인청년학교 3기 자료집, 한국 DPI, p.107)

¹⁹ 그런데 장청과 장한협의 통합은 운동 정체성의 혼란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대중력 보안을 명분으로 한 통합은 "장애인운동의 전망에 대한 중심쟁점을 상실하게 하였고 체제흡수적 성향의 관련 장애인 단체간의 이념, 노선, 전술 구분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동 내용상의 구분조차 불분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대성, 1993. "한국의 장애인들, 무엇을 할 것인가?", 제1기 전장협 아카데미,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p.65) 전장협의 탄생은 진보적 장애인운동 진영 내의 이념 수정 즉 전면적 체제변혁 지향의 계급적 장애인운동에서 민중적 시민운동 내지는 체제내적 신사회운동 혹은 인권운동으로의 부분적 노선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면에 이르면 장애복지운동은 체제 모순 폭로를 위한 도구적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 운동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전장협을 축으로 한 장애대중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성격의 '진보장애인운동 연합체' 건설의 필요성도 개진된다. 그리고 운동방식 또한 점거와 같은 선도투적 방식을 넘어 보다 다원화된 형태도 요구되어 진다. 김대성(1993:67-69) 참조.

²⁰ 한국DPI 사무처장 이석구 인터뷰, 2005년 7월

²¹ 전장협이 주도한 구체적인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채종걸, 이석형, 2002. 장애해방 그 한길로!,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특히 장애인운동사에서 기억되어야 할 부분이 90년대 중반 빈민장애인운동이다. 최정환, 최옥란, 이덕인 그리고 청계천과 아암도로 상징되는 그 투쟁의 시기에 전장협은 그 중심에 있었다. (김용출, 2003. 최옥란 평전-시대를 울린 여자, SEOUL POST, pp.188-191) 또한 90년대를 관통하며 이루어진 전장협 중심 장애인운동의 연도별 내용은 어느 활동가의 약력에서 그 전형을 발견한다. "박홍수 열사 약력 - 1958년 5월15일 서울 출생 - 1959년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를 입음(지체장애 1급) - 1987~88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과정 동문회 '씩툼' 회장 역임 - 1988년 신망재활원 건립 반대 사건 투쟁 - 1988년 장애인올림픽 개최 반대 조직 위 점거 투쟁 - 1989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점거 단식농성 - 1989~1992년 목공예공장 취업, 노동자 생활. - 1992년 정립회관 비리 관련 점거농성 - 1993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서울지부장 역임 - 1993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부회장 역임 - 1994년 최정환 열사(노점상 단속에 항의해 서초구청에서 분신) 투쟁 - 1994년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역임 - 1995년 인천 아암도 투쟁 - 1995~96년 이덕인 열사(인천 아암도에서 의문사) 투쟁 - 1999년 장애인실업자연대 위원장 역임 - 2001년 7월 23일 지병악화로 사망" 출처: <http://www.taesoo.or.kr>

거기다가 조직 성장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이념의 위기까지 겹치게 된다. 기존에 청년장애인운동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의 이념은 장애의 궁극적의 원인을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두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쟁적인, 능력위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장애를 창출하고 강화하는 근본 원인으로 설정됐던 것이다. 장애문제 해결의 중요 단계로서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과--물론 명시적인 형태로 표현되지 않았지만--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전망은 비중 있게 설정되었다. 즉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청년장애인운동의 이념적 지향은 체제변혁적이었다. 운동의 궁극적 지향은 장애복지정책의 제도화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의 전망을 밝히는 것에 두어졌다. 요컨대 장애인운동은 그 자체적인 이념과 지향을 지닌 운동으로서 라기 보다 전체 사회변혁운동의 부분운동으로서 위상 설정 되었다.²² 그런데 90년대 초반부터 그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기존의 운동 사회와 운동가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준다. 물론 사회주의 이념은 훌륭하고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의 무너짐이란 현상 속에 운동의 이념 또한 그 지배력을 잃게 된다.²³ 미약한 대중조직화와 이념의 위기라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전장협으로 상징되는 민중적 장애인운동은 큰 힘을 쓰지 못한다.²⁴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침체 국면 속에 90년대 전반에 걸쳐 이전과 다른 장애인복지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각종 장애관련법들이 제정 혹은 개정되고 무엇보다도 장애관련예산과 각종 시설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²⁵ 그런데 이런 문제

²² 김철득, 1988. "장애해방이란 과연 무엇인가?" 환설 7호; 김한배, 1989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과 올림터", 환설 8호; 정우영, 1991. "자본주의 체제 모순해결을 통한 장애해방 이루어야",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신문 3호(1991.8.1)

²³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상황 또한 변혁적 이념의 위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호, 2003. "한국장애해방운동의 역사", 장애인청년학교 3기 자료집, 한국DPI, p.106

²⁴ 90년대에 이러한 이념과 대중조직 양 쪽의 문제 속에 위축되었던 것이 전장협으로 대표되는 민중운동 지향의 장애인운동만은 아니다. 민중운동적 전망을 가졌던 여러 다른 사회운동들 또한 동일한 위축현상을 나타냈고 그 와중에 경실련 등 합법 전술과 언론플레이를 매개로 하는 (중산층)시민운동적 관점의 운동단체들이 사회운동의 중심을 차지했다. 김호기, 2000.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경제와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48호, p.17.

²⁵ 청년장애인운동이 발흥하던 1986년 장애인복지예산은 1백억원 정도였고 장애인운동의

가 뒤따랐다. 장애인관련예산과 시설이 현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장애인당사자의 삶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90년대를 관통해 형성된 복지의 제도화는 대형시설 혹은 가정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복지의 확충이 왜 장애인들에게 실제적인 효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사회적 자원이 장애인들에게 직접 가지 않고 시설을 통한 간접 지원 형태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책임감 있는 주체가 아닌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만 인식했다. 그러기에 자원은 시설 중심으로 집행되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권력은 시설에 있었다. 그리고 시설에게 있어서 장애인은 시설유지와 사업 집행을 위한 대상자일 뿐이었다. 요컨대 장애인이 주체적 인간으로 서지 못하고 내내 서비스의 대상자로서만 기생적 삶을 이어가는 현실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제도화와 자원 전달 체계가 비대화 된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자원이 직접 꽂히는 직접전달체계대신 시설을 통해 우회되어 집행되는 간접전달체계만이 90년대 즉 장애인 당사자 없는 장애인복지 제도화의 시대에 과잉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장애인운동 당사자들이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러나 문제를 이슈화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조직, 대중, 이념, 자원 모든 면에서 미약했다. 90년대를 살아간 전장협들의 직업운동가들은 두 가지로 배고팠다. 먼저 운동자원이 없어 배고팠다. 그 당시는 대부분 가족 혹은 후원자에 의지하거나 큰 이득이 없는 수익사업을 통한 자원조달이 전부였다. 예컨대 1997년 전장협의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36,795천원의 수입구성은 개인후원금, 자판기수입사업, 사진대여금, 자료집판매금, 열린마당후원금, 열린마당참가비, 간부수련회참가비, 일일호프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정부의 지원이나 기타 기금사업 혹은 프로포절 사업으로부터의 지원은 없었다.^⑥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중이 없어 배고팠다. 이 두 번째 배고픔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매년 행해지는 평가회에서 늘 지적되는 사항은 조직화의 문제였다.^⑦ 이 두 가지 배고픔 속에서

큰 흐름이 지나간 1993년에도 3백8십억원 정도였지만 90년대를 관통하고 난 후 2000년에는 그 예산이 1천4백억원대로 올라서게 된다. 그리고 1993년 199개에 불과하던 장애인관련 시설들이 1990년대를 관통하고 3년이 지난 시점인 2003년에는 979곳에 이르게 된다. 차홍봉, 2004. "한국장애인복지의 발전과 학회의 역할". 한국장애인복지의 변화와 전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창립세미나. p.20

⑥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1997. 간부수련회 자료집. p.38

⑦ 양천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상호 인터뷰, 2003년 12월

90년대를 살아왔던 게 바로 한국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이었다.^⑧

20년의 구애

장애인운동가들이 가난하고 대중에 배고픈 90년대 세월을 지내오면서 '아, 이래선 안되겠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겠다' 싶어 그들이 시작한 것이 우선 새로운 이념을 찾는 것이었다. 90년대 중반 전장협 내에 IL연구팀이 꾸려진다. 이경미를 위시한 연구팀원들이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이념으로서 자립생활이라는 이념을 탐색한다.^⑨ 그런데 전장협 연구팀이 IL 이념을 들여오면서도 이것이 운동이념으로 작동 할까, 장애 대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은 크지 않았던듯하다.^⑩ 그러나 현장에서 IL 이념은 엄청난 태풍을 몰고 왔다. 그 어떤 정책으로도 만나오던 중증장애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조직을 결성하고 운동의 전선에 섰다.^⑪

그렇다면 이 IL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중증장애인들을 이토록 흥분시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든 것일까? IL의 핵심은 무엇인가? IL은 흔히 재활에 대비된다.^⑫ 재활은 장애인을 사회에 맞추는 것이다. 장애인을 훈련시켜 사회에 그들

⑧ 90년대 장애인운동의 상대적 위축을 가져온 요인들에는 재정적 자원의 부재, 활동가 및 대중 부재와 더불어 이슈부재도 들어간다. 이 당시는 아직 스스로 이슈 창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애학교 건립반대 등 타율적인 이슈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 "변혁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내부적 논쟁과 양대 법안 같은 대중적 이슈의 부재는 장애인운동이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 한계로 다가오게 된다."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신문 4호, 1991.10.20; 문희 외, 1993. 올림픽 활동기록집, 장애인문제연구회 올림터, p.99)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운동 비활성화의 요인으로는 이념이나 운동방식의 좌파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또한 운동인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자원동원력이 미약한 20대를 거치고 있었다는 생애주기적 차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⑨ 사실 이때 처음 IL 이념이 소개된 것은 아니다. 이전단계에서 이미 IL에 대한 소개는 있었다. 예컨대 서화자(1995) 등 학계를 통해 이미 도입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운동이념 차원보다는 사회사업 이념적 차원에서 도입된 구도라고 볼 수 있다. 학문적 차원의 이념 소개와 운동에의 실천적 적용 의지는 다른 차원이다.

⑩ 1996-1997년에 걸쳐서 이경미를 위시한 전장협 연구팀이 IL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했지만 IL이라는 이념적 자원의 운동적 동원에는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았던듯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오히려 IL이라는 불씨를 퍼트린 것은 정립회관과 일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함께 진행한 IL 전국 순회 투어와 정립회관에서 진행한 동료상담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이념 수용과 자발적 운동 형성이 이루어진다.

⑪ 최희정, 2003. "처절함으로 차별에 맞서다". 함께걸음 12월호

⑫ 자립생활운동가이면서 국제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이기도 했던 렉스 프리슨이 말하듯 IL과 재활이 무조건 대립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장애인복지신문, 2002년 3월 1일) 양자는 상호보완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다.

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IL의 이념은 반대로 사회를 장애인한테 맞추는 것이다. 장애인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속도와 개성에 맞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당사자 스스로 참여하여 이루고 그 변화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이념이 들어왔을 때 장애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장애인 대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 있는 장애인운동의 시대를 불러온다.^⑬

우리는 이런 말을 쓴다. 뭔가 '딱 맞아' 하는 표현으로 '필(feel)이 꽃혔다' 라고, IL은 이 필을 시설^⑭ 생활 당사자에게도 직업적 운동가에게도 꽃는다. 우선 IL은 시설장애인의 꿈인 탈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지 꿈 혹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IL은 탈시설의 무기마저 던진다. IL이 제기하는 이슈들, 즉 '이동권을 쟁취하자, 주거권을 쟁취하자, 활동보조서비스를 쟁취하자, 연금을 쟁취하자' 라는 슬로건 혹은 전술들은 바로 탈시설의 조건들을 향한 것들이다. 이러한 구도는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의 '변화를 향한 열망' 에 불을 댕길

그러나 하나의 이념형적 대비로서 그리고 대중적 강의에서 보다 간결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거친 이항대립을 시도한다.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보다 자세한 비교는 다음의 글 참조. Dejong, Gerben. 1979. *The Movement for Independent Living Origin, Ideology and Implications for Disability Research*. Heller Graduate School Brandeis University Waltham, Massachusetts. p.62

⑬ IL 이념이 운동세력에 의해 보급되었기에 시설의 장애인들이 운동에 결합했다는 본 글의 주장은 이후의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경증장애인 중심의 청년장애인 운동이 주축하던 90년대시기에, 그리고 IL 이념이 보급되기 이전부터,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 운동주체들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그 준비된 주체들에 의해 IL 이념이 수용되고 확산되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주체들 중의 한 부분이 뇌성마비장애인들이었다. 특히 올림피 구성원이었던 최옥란 그리고 배용한, 표기돈, 김재용, 김해원, 서순용, 이인구, 이자영, 허경남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 진 뇌성마비연구회 바롬은 이후 자립생활운동을 촉으로 하는 2000년대 한국장애인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바롬의 형성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김용출, 2003. 최옥란 평전-시대를 울린 여자. SEOUL POST. "8장. 바롬, 뇌성마비인을 노래하라" 참조.) 바롬의 주체들이 독자적인 조직과 주체형성을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장애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장애인 문제의 개선책들이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는 요원한 남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며 그러한 노력의 과정 속에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뇌성마비 장애인단체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뇌성마비 장애인 각자의 주체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다..."(뇌성마비연구회 바롬 설립 취지문 중에서. 1993)

⑭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굳이 대형생활시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이 시설장과 시설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 가정 또한 시설에 다름 아니다.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권한이 가족에게 주어지고 장애인 자신에게는 주체적 삶의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말이다.

수밖에 없었다. IL은 시설 생활 장애인만이 아닌 직업운동가들에게도 필을 꽃는다. 전장협의 연말 평가회에서 항시 제기되던 과제는 조직사업이었다. 상당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장청이 장애인가족협회와 결합할 때도 가장 큰 이유는 대중 조직화의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도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IL 이념을 축으로, 그리고 PAS, 연금, 주택 등 구체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지역과 시설의 장애인당사자들을 조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당사자 운동가들이 인식하게 된다.^⑮ 노동운동, 학생운동과 달리 장애인운동은 항상적으로 대중을 만날 수 있는 장(場)이 없었다. 그런데 이 IL이 '지역에 숨은 장애인들을 끌어낼 수 있구나' 라는 전망을 만들었고 그 전망은 곧 현실화되었다. 2000년 이후 많은 자립생활센터들이 만들어졌고 전체 장애인운동의 주된 동력으로 활동하게 된다.^⑯

재가 혹은 시설 장애인들과 당사자 직업운동가들이, 바로 20년이라는 서로간의 구애의 세월을 보냈다. 시설의 장애인은 '나 뛰쳐나가고 싶어, 자립생활하고 싶어, 운동하고 싶어', '누군가 나를 좀 끌어내줘' 하며 누군가를 애절하게 기다렸던 것이고, 직업운동가들은 20년 동안 자신의 꿈인 장애해방의 꿈을 실현할 동지, 대중활동가들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두 집단이 2000년대 들어 IL이라는 깃발아래 서로 만난 셈이다.

작업

흔히 작업이라고 하면 장애복지에서는 작업치료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맨 먼저 연상되는 것은 연애작업일 것이다. 연애의 성공조건에는 돈이나 학식 혹은 외모 등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pride), 주체적 홀로서기이다. 스스로 자기 프라이드가 없게 되면 그것은 연애 작업이 아니라 연애구걸이 된다. 물론 구걸을 통한 성공적 연애작업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⑮ 이상호 인터뷰 2003년 12월

⑯ 광주 우리이웃센터, 동대문 피노키오센터를 필두로 전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 걸쳐서 많은 자립생활센터들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이 센터들이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자립생활센터연합회라는 연합단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주력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운동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어온 말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마도 '시민사회와 연대하라' 일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의 연대론은 여전히 연애 구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연대가 이루어지려면 강력한 자기세력화를 전제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권력은 동원되는 사람의 수에서 나온다. '대중적 조직화' 곧 '자기세력화' 를 이룬 집단만이 권력(power)을 가진다. 그리고 그 권력에 기반 해서 건강한 연대도 가능하다. 그리고 드디어 장애인운동은 10년 역사의 IL운동^⑦을 축으로 '자기세력화' 라는 중요한 단계를 맞고 있다. 선진적 인자들만의 운동이 아닌 대중 참여적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조직화, 자기세력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IL운동을 축으로 한 현 단계 장애인운동은 복지서비스를 넘어 큰 방향으로 인권 곧 사회적 권리 일반을 지향한다. 그리고 대상에서 주체로 즉 서비스의 대상, 시설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이 주체로서 참여하여 결정하고 그 시행결과에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운동의 구체적인 노력의 방향들은 이러하다.

현재의 장애인운동은 우선 서비스의 제도화를 넘어서서 환경의 제도화를 지향한다. 환경 제도화의 전형적인 형태가 이동권 투쟁이다. 장애인운동이 폭발한 계기들 중의 하나가 되는 이 이동권 투쟁에는 이동권연대의 저상버스와 엘리베이터 확보 투쟁, 전동연대의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 투쟁이 속할 것이다.^⑧ 그리고 한편으로 환경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주거권 운동에 대한 담론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⑨ 활동보조서비스(PAS) 논의 또한 환경 제도화의 중심축이다.

⑦ 한국 IL 운동의 역사를 어느 시점부터 논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단 전장협 IL연구팀의 활동시기, 정립회관과 일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IL순회세미나를 기점으로 볼 때 10여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당사자주의, 사회 자체의 변화라는 이념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IL운동의 역사는 1980년대 전지대연, 울림터, 서울장애인복지관 동아리 싹틔움의 태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⑧ 이동권 운동의 시작은 아마도 1997년부터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편의연대의 이전 이름)에 의해 제기된 저상버스 도입운동일 것이다.(자유공간, 2003.10) 이후 오이도역 추락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동권연대의 버스타기 운동과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운동이 이동권 운동의 전형으로서 전개된다.(최병선 외, 2004. 더 이상 죽을 수 없다-장애인 이동권연대 투쟁의 기록, 박종철출판사; 위드뉴스, 2005.6.30) 또한 전동연대에 의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 투쟁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투쟁의 지점으로 자리매김 된다.(장애인복지신문, 2003.10.17; 에이블뉴스, 2004.12.1)

⑨ 아직 주거권에 대한 주장이 광범위하게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은 서서히 논의되고 있다. 변경희, 200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평가를 통해 본 IL센터 운영의 발전방향". 한국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pp.8-10; 조한진, 2004. "장애인 가구의 소득,

다음으로 장애인운동은 사회적 자원의 직접전달체계 구축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장애관련 예산의 상당부분이 시설을 통해 집행되는 이런 형태의 자원의 흐름과 쓰임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 즉 간접전달체계를 직접전달체제로 바꾸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한 예가 사회적 수당으로서의 장애인연금 쟁취 투쟁이다. 장애인의 자기선택/결정권과 생활권 확보를 위한 이 투쟁은 장애인운동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물적 토대로 작용하리라 본다.^⑩ 환경의 제도화와 직접전달체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장애인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 가는 세 번째 지점은 지역사회의 변화이다. 장애인운동 특히 IL운동에서 말하는 권익옹호는 단순히 장애인이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것이나 지역사회에서 편의시설 몇 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한 사람의 주민이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권익옹호이고 장애인운동의 본령이다.^⑪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변화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운동의 방향 설정은 여타 시민사회와의 연대작업 또한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다.

구별과 연대

1980년대부터 이어진 장애인운동 역사의 변화 과정은 사회운동론적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운동은 초기 체제변혁적 운동에서 시작하여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인권운동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장애인운동은 2000년대 당사자주의의 강화 속에서 추상적 인권을 넘어 구체적인 차별금지운동으로 그리고 참여와 결정을 위한 권력 쟁취 운동으로 이행하고 있다.^⑫ 두 번째로 이념

주택 문제와 정책,서비스 방안". 한국장애인복지의 변화와 전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pp.52-56

⑩ 직접전달체계 구축은 시설 비리 척결의 열쇠이기도 하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 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와 같은 단체의 활동 속에 시설 비리들이 최근 들어 활발히 밝혀지고 있다. 최근에 공대위에 의해 밝혀진 대표적인 시설비리는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장애아동시설 '솔잎원'의 비리일 것이다. ("특집: 옥탑방에서 벌어진 장애아 학대의 진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2005.6) 시설비리문제 해소의 요체는 소비자가 구매력을 가지고 시설을 직접 선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만이 해소될 수 있다.

⑪ 유동철은 장애인운동의 지향점으로 '환경의 총체적 전환'을 논하는 바, 이 또한 제도개선을 넘어서는 사회와의 결합과 변화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유동철, 2004. "장애인운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장애인 리더쉽 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 p.39; 자립생활운동이 지닌 지역사회운동적 의미와 공동체문화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정식, 2004. "장애인 자립생활운동과 대안문화". 한국DPI, 보이스, 여름호, 참조.

적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운동 방식에 있어서 소수의 선진엘리트 중심의 선도 투에서 일반 장애인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전술적 차원에서도 점거와 집회 등의 비합법 수단만이 아닌 캠페인, 공청회, 교육 사업 등 다양한 합법 수단을 동원한 운동 형식을 수용한다. 장애인운동의 세 번째 변화로 운동 공간적 측면에서 국가사회에서 지역사회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이는 자립생활운동이라는 이념의 확산과 크게 상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운동은 종합적 운동에서 전문적 운동으로 전화하고 있다. 90년대까지의 운동이 전장협이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모든 사안에 무차별적으로 결합하는 종합선물세트식 운동양식을 보였다면 2000년대 장애인운동은 운동조직별로 전문적인 영역 중심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필요할 때 마다 사안별로 연대체를 꾸려 대응하는 선택과 집중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큰 틀에서의 변화를 논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념형적인 분류일 뿐이다. 현 단계 장애인운동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평가는 '구별과 연대'이다. 한쪽에는 노들야학 그룹과 같은 계급적 관점의 좌파운동 전략을 취하는 그룹이 존재하고^③ 다른 한쪽에는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체제내적 운동방식만을 고수하는 그룹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적 관점에서 다양한 장애영역별 단체와 그들의 운동이 지니는 내재적 합리성을 인정하면서 각각의 이해와 입장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역할로 자기 정체성을 표방하는 한국DPI 같은 그룹도 있다.^④ 뿐만 아니라 동일한 운동영역--예컨대 자립생활운동--내에서도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보인다.

요컨대 한국사회의 장애인운동은 다른 시민사회운동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조직들의 복합구성적 성격을 띠면서 종합적 운동에서 전문적 운동으로 변화하고 있고^⑤ 이와 함께 '따로 또 같이' 즉 '구별 속의 연대'라는 고유한 운동양식을 보이면서 2000년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다.

② 박옥순. 2003. "추상적 인권에서 구체적 차별금지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12월호; 이익섭. 2004.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 인권운동: 그 배경과 철학". 제4기 장애인청년학교. 서울DPI

③ 노들야학을 축으로 하는 계급적 관점 장애인운동 그룹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박경석. 2004. "계급적 관점에서 장애인운동의 흐름을 꿰뚫어야 한다". 한국 DPI. 보이스. 겨울호. 참조.

④ 한국 DPI 이석구 사무처장 인터뷰. 2005년 6월

⑤ 종합적 시민운동과 전문적 시민운동의 구분에 대해서는 조희연. 1999.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그 변화의 전망에 대하여". <당대비평> 겨울호 참조

참고문헌

- 김규성. 1992. "92년 장애인운동의 전망과 청년들의 역할". 장애인운동 청년연합회 정기총회 및 창립 1주년 기념식 자료
- 김대성. 1993. "한국의 장애인들, 무엇을 할 것인가?". 제1기 전장협 아카데미. 전국장애인안가족협회
- 김대성. 1996a. "장애인운동의 현황과 전망". 장애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전국장애인안가족협회
- 김대성. 1996b. "장애인운동의 역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전국장애인안가족협회
- 김동호. 1988. "한국장애자운동론". 함성 6호
- 김용출. 2003. 최옥란 평전-시대를 울린 여자. SEOUL POST
- 김철득. 1988. "장애예방이란 과연 무엇인가?". 함성 7호
- 김한배. 1989.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장애운동과 올림픽". 함성 8호
- 김호기. 2000.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경제와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48호
- 나까니시 쇼오지 외. 1997.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현황". 정립회관. 제1회 한일장애인 자립생활세미나 자료집
- 문의 외. 1993. 올림픽 활동기록집. 장애인문제연구회 올림픽
- 박경석. 2004. "계급적 관점에서 장애인운동의 흐름을 꿰뚫어야 한다". 한국DPI. 보이스. 겨울호.
- 박옥순. 2003. "추상적 인권에서 구체적 차별금지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12월호
- 서경석. 1993. "시민운동과 장애인운동". 함께걸음. 1월호
- 서화자. 1995.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봄호
- 유동철. 2004.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장애인리더쉽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이경미. 1993. "한국자본주의와 장애인문제". 제1기 전장협아카데미. 전국장애인안가족협회
- 이경미 외. 1998. "자립생활센터 제안서". 전국장애인안가족협회 정책연구실 제1과제팀. 장애인자립생활연구. 미간행자료

- 이상호. 2003. "한국장애해방운동의 역사". 장애인청년학교 3기 자료집. 한국DPI
- 이익섭. 2004.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 인권운동: 그 배경과 철학". 제4기 장애인 청년학교. 서울DPI
- 이희경. 1993. "1960, 70년대의 장애인". 한국의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 임인수, 송영옥. 1997. "장애인복지제도의 변천".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양서원
- 전정식. 2004. "장애인 자립생활운동과 대안문화". 한국DPI. 보이스. 여름호
- 전정식. 2004. "연구노트: 전지대연과 장고법 투쟁". 한국장애인 리더쉽 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정태호. 1987. "한국 사회운동과 장애자운동". 함성 4호
- 조희연. 1999.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그 변화의 전망에 대하여". <당대비평> 겨울
- 채종걸, 이석영. 2002. 장애해방 그 한길로!.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최동익. 2004. "장애인운동의 평가에 대한 재조명". 한국장애인 리더쉽 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최병선 외. 2004. 더 이상 죽을 수 없다-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의 기록. 박종철출판사
- 최희정. 2003. "저절함으로 차별에 맞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12월호
- 한완상, 한군자. 2000.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Blumer, H. 1988. "집합행동이란 무엇인가". 김영정 (편).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현암사
- Dejong, Gerben. 1979. The Movement for Independent Living Origin, Ideology and Implications for Disability Research. Heller Graduate School Brandeis University Waltham, Massachusetts
- Michael Oliver. 1999. "장애의 정치학-신사회운동.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사회참여". 서울장애인연맹출범한마당기념 자료집. 서울장애인연맹(DPI Seoul)

일본장애인운동의 현안과 과제

제 10장



미사와류 DPI일본회의 의장

일본장애인운동과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일본의 장애인운동과 현안>

미사와 료 [DPI일본회의 의장]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움직임 (1997년부터)

2차대전 후 50년동안 유지되어 왔던 행정당국 주도의 복지서비스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라는 모습으로 1997년쯤 일어나기 시작되었다. 일본 사회복지의 기본적 제도이던 조치제도와 사회복지법에 의한 서비스제공 방법을 바꾸고 다양한 서비스제공자를 전제로 한 계약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려는 것이다.

자연봉사에 의존되어 왔던 활동보조인 파견 체제

일본에 있어서는 1960년대 중순경 부터 장애인 복지의 핵으로서 각종 생활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 졌다. 특히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가운데 생활보조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는 거주시설들이 줄이어 건설되었으며 그 시설들이 장애인에 대한 개호서비스 역할을 맡아 왔다. 1970년대 후반 부터 심한 장애를 가지고 많은 개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서히 지역생활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보조(개호)는 많은 자연봉사자들이 맡았던 것이다.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흐름

1980년대 후반이 되어 고령자시책으로 홈 헬퍼 파견사업이 제도화되어 1990년의 복지 관계법이 큰 폭으로 수정되었으며, 그 제도가 장애인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한정된 양이긴 하지만 홈 헬퍼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정부의 제도적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동경도나 오오사카부 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독자 활동보조파견사업이 창설되었으며,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역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지원비제도로 이행하기 직전이 2003년 시점에서는 개소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서비스개시 하였다.

개호보험법 실시(2000년)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시책으로 복지서비스에 보험시스템이 구축되고 더욱이 주식회사에서 까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될정도가 되었으며,

이 개호보험제도가 2000년에 개시되었다. 이 제도는 원칙으로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가정내의 문제라고 해왔던 개호문제를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전국공통의 서비스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진하고 있지만 제도의 시스템이 어디까지나 가족의 개호를 보충해준다는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동 개호등의 메뉴가 시스템에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활동기에 있는 젊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로서는 부적당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성립(2000년)

같은 2000년에는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한 사업법이 사회복지법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그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이용자와 사업자의 계약에 기하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로서 지원비제도가 설치되었다. 지원비제도의 실시는 3년후의 2003년에 3년간의 제도의 세부적인 부분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지원비제도의 개시(2003년 4월)

2003년 4월부터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시스템의 지원비제도가 실시되었다. 지원비제도 안에는 장애인의 지역생활의 지원으로 하는 홈 헬퍼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의 3개의 기둥이 만들어졌다. 당초안의 홈 헬퍼서비스는 신체개호, 가사지원, 이동개호의 3개의 메뉴에 따라서 구성되었으며, DPI일본회의를 시작으로 장애인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장시간활동보조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참가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메뉴의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상생활지원이라는 메뉴가 추가되었지만 당사자단체가 요구하는 사회참가지원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형태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이동개호라고 하는 형태는 가이드헬퍼, 외출지원제도적으로 명기되었던 것은 커다란 전진이었다.

개시직전의 곤란

지원비제도가 발족하려고 하던 2003년 1월에 정부와 후생노동성은 갑자기 지원비의 이용상한설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서비스기준을 내놓았다. 경증의 장

애인에 대하여는 30시간,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50시간, 전신성장장애인에 대해서는 125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의 상한을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갑작스런 후생노동성이 내 놓은 방침에 대하여 이 예산으로는 중증장애를 가진 많은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생활할 수 없게 되는 위기감을 가진 전국의 장애인이 항의 목소를 내고 상한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은 업동의 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3주간에 걸쳐 연일 후생노동성앞에서 항의를 계속하고 최종적으로는 앞으로의 기준을 개개인의 상한을 두지 않을 것을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지원비제도를 발족시켰다.

이 행동은 DPI, JIL등 일상적으로 운동을 같이 해온 단체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임을 포함하여 많은 전국의 단체가 공동으로 투쟁하였다는 것이 커다란 의의라 볼 수 있다.

이용하기 쉬운 제도

발족되던 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지원비제도이지만 시작하면서는 커다란 곤란없이 실시되었다. DPI가 2003년의 가을에 실시한 이용현황조사에서는 반수 이상의 사람이 종래의 제도보다 이용하기 쉽게 되어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 명확한 제도적인 위치가 잘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던 이동지원이 원칙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점이 제도를 이용하기 쉽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자원부족, 자원확보의 시스템(2003년 10월)

지원비제도가 실시되고 반년이 지난 2003년 10월에 4월, 5월에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2003년보다 년도의 비용계산 의해 100억엔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사업개시의 년도부터 커다란 적자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제도의 제도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계속해서 2004년도에도 200억엔을 넘는 적자가 나온다는 예상이 되어 자원확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자원부족의 커다란 원인은 이동개호등의 예상이상의 이용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사전의 이용조사 없이 예산을 세운 것이 원인이며, 전체의 파이를 넓히는 것이 먼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원을 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개호보호법과 통합의 움직임(2004년)

지원비제도의 자원확보의 방책으로 먼저 후보가 된 것이 개호보험제도에의 통합을 계획한다는 안이었다. 정부 후생노동성은 2004년1월에 개호보장개혁본부를 만들어 개호보험제도의 수정작업에 들어 갔다. 그것과 동시에 후생노동성의 장애부국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개호보험에 통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다. 또한 주요8개의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부국과 사이에 장애인서비스와 개호보험의 통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검토되었다. 장애인단체로부터는 개호보험과 통합할 경우의 의문이나 위험이 20항목이상이 있음을 제시하고 협의를 계속했지만 후생노동성측으로부터 장애인단체를 안심시킬 수 있는 안을 내 놓지 않았다. DPI일본회의로서는 그 시점에서 개호보험과 통합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어 개호보험자원이외에 자원확보의 길을 찾아, 지원비제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4년 10월에는 개호보험통합반대의 전국집회를 개최하고 2000명에 가까운사람들이 전국으로부터 후생노동성앞에 결집했다. 그 행동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599이상의 단체에 의해서 전국위원회가 추적을 했다.

장애인보건복지시책과 앞으로의 방향 -개혁의 그랜드디자인(2004년 10월)

개호보험 통합문제가 표현무대로부터 그림자를 숨긴 2004년10월에[장애보건복지시책의 그랜드디자인]을 발표하고 지원비 대신에 새로운 제도의 골격을 밝혔다. 그 그랜드디자인은 지원비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의 방식이나 서비스의 지급 결정방식에 큰 폭으로 변경되었고 계속 가능한 제도에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 그랜드디자인을 기본으로 제도를 만들고 2006년 연초부터 제도적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DPI일본회의는 그랜드디자인의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 그랜드디자인의 시급한 실시에 반대하는 행동을 10월에 열었다. 태풍이 동경을 직격하는 큰 비속에서 1000인 이상의 참가자가 집회, 데모로 국회앞에서 어필하고 정당토론회와 다면적인 행동을 전개해왔다.

장애인자립지원법안

작년10월 그랜드디자인이 제시되고 약 4개월이 지난 2월10일에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상정되었다. 그 사이에 법의 중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장애인부에서 설명했던 것이 있었지만 충분한 심의가 열리지 않고, 장애인단체등이 협의가 충분히 열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상정되었다

2004년6월,12월,2005년2월이 행동을 해왔지만 국회심의회가 개시되기 직전 5월12일에 열린 제5차 전국행동은 전국실행위원회의 만이 아니라 단체와의 공투(공동투쟁)라고 하여 전체 8500명을 넘는 사람들이 후생노동성주변의 공원에 모여 국회에 대하여 청원행동을 시작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법안의 문제점과 수정의 요청행동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안"의 큰 특징은 종래의 지급능력에 따라 이용료의 부담을 내는 것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수입(지급할 능력)과는 무관계에 일정률의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는 것, 서비스양을 결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가질 것, 또한 서비스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기구를 시정촌에 만들게 하는 것, 더욱이 신체 정신지체 정신의 3종의 공통의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등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징이 되는 것의 배경에는 서비스의 이용억제를 재고 재정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전국의 많은 장애인이 이 새로운 법률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역에서나 생활을 계속해 갈수 없는 것에 대한 커다란 불안과 위기를 느끼고 있다.

자립생활조건을 후퇴하지 않음, 자립생활의 붕괴를 용서할 수 없다.

- 우리들을 빼고 우리들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아주세요.
- 당사자의 욕구, 자기결정을 존중한 서비스 결정
- 장애인의 지역생활 사회참가의 근간적 서비스로서의 이동개호를
- 필요한 서비스를 얻는 것-실태와 시책의 정합성을 가진 부담의 시스템을
- 장애인의 지역생활,자립생활을 중시한 서비스의 방법을 검토
- 육간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재검에

지원법의 문제점 10개

- 본인에게 알맞게 정하는 시정촌심사회
- 고령자중심의 요개호인정을 기반으로 한서비스의 척도
- 이동지원사업은 재량적경비의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 자립지원금부의 의무적 경비에는 상한이 있다.
- 중증장애인등포괄시지원은 서비스가 소멸될 두려움이 있다.
- 그룹홈의 재편 지역생활의 장이 미니시설로
- 난치병등의 장애인은 다시 서비스대상의
- 저소득층도 10%의 부담 정율부담
- 부양의무의 강화 동일세대의 수입합산으로 경부부담
-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는 장애인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음



5기 기장 선출되었습니다! [박정엽]



눈빛상! 이선의! 눈을 떠!



제일 좋은 상은 인기상이야~ [박계영]

질문 1) 일본DPI와 일본장애인단체와의 협력관계는 어떠한가.

답변 1) 2002년 10월 삿포로에서 세계DPI대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일본DPI가 전국적인 단체들과 운동을 한 적이 없다.

세계회의의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고 기존의 단체와 함께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다른 단체와 협력체계를 갖춰서 성공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얻었다.

성공을 보고 다른 전국규모의 단체들이 일본DPI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은 과격한 단체, 작은단체정도의 인식뿐이었지만, 2003년 지원법의 공동대책에 있어 일본DPI가 주도하면서 전국단체를 총화할 수 있었다.

지금은 여덟 개의 전국규모의 단체가 하나로 협력하고 있다. 함께할 수 있는 점은 같이하고 같이 못하는 점은 독자적으로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하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질문 2) 여행사에서 장애인대중교통의 배리어프리를 연계한 부분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부분과 연계가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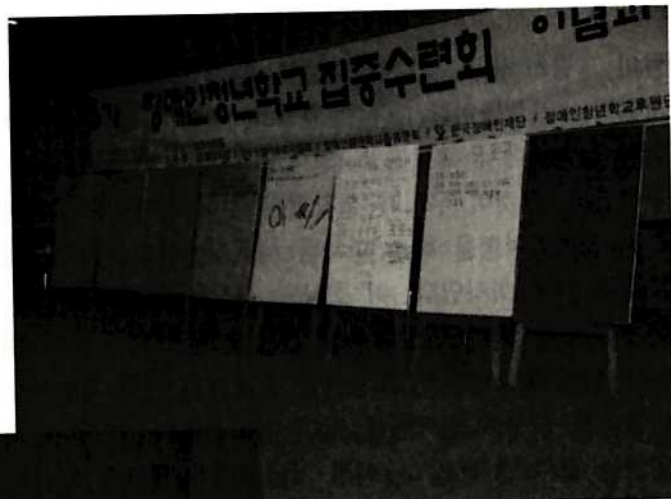
답변 2) 이마니시 : JTP에서 일한 것은 5년전부터이다. 81년 국제장애인해부터 도쿄콜로니라는 큰 장애인 사회 복지 작업장이나 사무실을 모은 곳이 있다. 이런 것이 일본에 많이 있다. 이 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양성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도 중증장애인이 노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일을 하지 못했다. 일 할 수 있는 장애인은 손을 움직일 수가 있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장애인만 일할 수 있었다.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해서 컴퓨터에 관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14년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일을 했고, 그때는 비장애인도 소프트웨어개발을 하는 사

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일감이었다. 퍼스컴이 보급되며 많은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게 되었고, 일감이 많이 줄게 되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도쿄콜로니안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였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장애인의 여행이었다. 트라비노네트라는 장애인여행을 하는 회사를 세웠다. 이회사는 도쿄콜로니와 J-TV와 출자해서 만든 회사였다. 이 회사의 사장을 하면서 J-TV가 이 프로그램을 받아 배리어프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일반기업에 고용되는 방법이 하나있는데, 고용율을 증대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든다. 특례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 장애인을 많이 취직시킨다.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많지 않다. 이런 고용형태가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고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이 법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고, 고용된 장애인의 월급을 1년동안 보장하는 제도도 있다. 직장에서 직장개조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직장개조를 하는 사람에 대한 월급을 보충하는 제도도 있다. 일반기업에 취업하여 일하는 장애인은 드물다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질문 3) 일본과 한국에 DPI가 있는데, DPI에 대한 소개 부탁

답변 3)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120개국 이상에서 DPI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각국마다 조직의 형태나 많은 점이 다르고 공통된 점은 없다고 생각된다.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당사자 스스로 당사자에 대한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곳이 DPI라고 볼 수 있다. 6월에 DPI북아시아대회가 홋카이도에서 열렸다. 제1회 대회는 한국의 제주주도에서 개최하였다. 북아시아지역 사무국은 한국이 맡고 있다. 한국DPI나 일본DPI같이 국내에서 DPI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조직을 갖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는 다른 이름인데 국제무대에서는 DPI라는 이름을 쓰는 단체도 있다. 한나라에 한개씩 캐나다에 있는 본부에 등록을하고 DPI라는 이름을 쓰게 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속하는데, 북아시아의 4개지역(한국, 일본, 중국, 몽골)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달간 함께 한 정든 모듬게시판

정년학교! 골든문제를 풀어낸 양효정샘~
Nothing about Us! Without Us!



포토제닉 수상자 심유경! 박경미!

장애인법안투쟁의 의미

제 11강



김대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kdsdpi@hanmail.net

장애인법안투쟁의 의미

김 대 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실장]

현재 국회에 발의 되었거나 발의될 장애인관련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연금법제정,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개정, 조세특례제한법개정등이 있다.

최근들어 이처럼 많은 법안들이 제·개정을 위해 봇물처럼 솟아지는 이유는 첫째 장애인들의 역량강화가 있었고, 둘째 그동안 장애인문제의 심각한 현실이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며, 셋째 사회시민의식이 성숙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88년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과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 투쟁을 통해 장애인문제를 사회문제로 공론화 시켰으며 법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여 이후 미흡하지만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인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법제개정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복지진흥회(당시 장애인체육진흥회)가 탄생하였고,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되었으며, 5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장애인자동차대출등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과 장애인편의증진법 제정되었고, 2004년도에 이동편의증진법제정이 되었다.

이러한 법들의 제 개정과정을 보면, 정부(행정부)에서 알아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준것은 없다. 대부분 장애인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형식적이거나 만든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만큼 장애인문제에 있어 정부는 언제나 수동적이었고, 장애인당사자들은 능동적이었다. 다만 한가지 엘리트장애인집단에서 법제개정의 철학부재와 장애대중의 정서 또는 문제의식과는 별도로 한탕주의적 법안 제·개정작업이 진행된 적이 있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장애인복지가

후퇴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큰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장애인들의 정치·사회참여 의식이 높고 정보도 공개화 되어 몇 몇 소수의 집단이 자가당착적 법안 제·개정작업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가져올 법안 제·개정작업이 음밀히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법안 제·개정 투쟁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과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정책역량강화와 사회·정치 참여의식이 고양시킬 수 있고 장애인과 단체를 조직화 할 수 있다.

현대국가 특히 법치국가를 국가 모토로 삼는 나라에서는 무엇이든지 법에 근거하여 일을 풀어갈려는 원칙이 있다. 가끔 법을 무시한 초법적 행위들이 나타나 국가의 기강이나 법정신을 훼손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회시스템은 법에 의지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법을 제·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이익집단은 자기를 대변해줄 법을 만들기 위해 각 당에 줄을 서거나 재정을 지원해 왔다. 결국 국회의원수를 많이 장악하는 당이 법안을 제·개정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가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은 장애인복지와 인권의 매우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I.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취지 및 주요 기초

1. 법 제정의 취지

(1) 법제정의 배경

가. 장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자본주의의 폐해와 맞물려 많은 경우에 장애인을 집단화시키고 구분하여 장애인라는 특성을 과대하게 강조하고 조장하는 편견에서 기인한다. 즉 장애가 아닌 장애인을 불편하고 거북하며 열등하므로, 자선과 동정으로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낙인하거나 그러한 장애인의 이미지를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다른 종류의 편견과 유사한 원인을 갖는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차이가 존재한다. 비장애인간에도 현실적인 조건의 차이에 따라 존재하는 사회적 장벽을 경험하기도 한다. 장애

인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장애를 겪는 사람이고, 장벽이 장애이며, 장애는 사회적 장벽들이 견고하고 많을수록 가중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나. 국제사회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관심 확대

일부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장애는 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회여건의 개선을 통한 장애 해소에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많은 국가들에서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차별금지 내지는 권리보장 형식의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200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정된 장애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최근 인권 실현 판단의 새로운 시금석으로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흐름은 국제사회와 각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판단이 요구됨을 말하고 있다.

다. 기존 법률들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형식성 비판

기존의 장애인관련법은 누누이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 받아왔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차별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차별을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거나 유명무실하다. 또한 직접적 차별만 언급하고 있어서,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대하여는 초점이 없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으로는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차별에 대응할 수 없다.

(2) 법 제정 방향

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만든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의 하나는 “장애인 대중의 힘을 증대” 하고, 개인의 “역할과 자유를 확장” 시키는 데 있다. 개인의 능력을 함양한다는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이 있기에 본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Nothing About Us Without Us) 당사자의 경험과 판단을 우선하여 법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법제정소위원회는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가와 법조인, 각 분야의 전문연구인들로 구성되어 모든 법조항에 대해 토론하였다. 특히 차별금지의 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각 절의 법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제소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한 규정 한 규정을 다듬어 내었다.

나. 차별받는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은 전 생애를 두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길고 질긴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차별의 형태도 다양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다르게 대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는 본 법이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다. 장애인에게 있어 절실한 조치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차별로 규정하였고, 장애인의 공통된 경험에 의해 도출한 구체적 차별행위를 법문으로 명시하였다.

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되도록 한다.

법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장애인관련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험을 통하여 권리구제수단이 현실성이 있어야 함에 주의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으로 하고, 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가 다수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차별받은 장애인의 물리적·경제적 불리함을 고려하면서 차별 진정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피진정인이 하도록 하였다. 악의의 차별인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효과를 갖도록 하였으며, 차별간주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2. 주요골자

(1) 이 법의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로 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2) 이 법의 목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제1조)

(3)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정신적인 ‘차이’를 이유로 장·단기 또는 일시적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사회적 태도나 물리적·문

화적 장벽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제한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서(제2조 1호), 장애의 개념 변천에 따라 개인적 '차이'와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전반의 포괄적 장벽까지 적시하여 포함하였다.

(4) 이 법의 보호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관련자(“장애인등”)이다(제3조 제1항 1호). “장애인”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장애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제2조 2호)까지 포함하여서, 병력이나 기타 과거에 겪은 장·단기 또는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현재 개인적·사회적 장벽을 겪는 사람도 보호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관련자”는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장애인을 보조하는 자(제2조 3호)로서 이 법에 의하여 차별의 보호대상이 된다.

(5)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은, 장애인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형식상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비장애인과 같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제3조 1호, 2호). 또한 장애인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와 표현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차별로 정(제3조 3호, 4호)하여서 차별금지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본법의 특수성을 나타내었다.

(6) 본 법은 장애인 중에서도 성별, 장애의 유형, 장애의 정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주의하였다. 따라서 차별 여부의 판단은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장애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였고, (제3조 제6항) 이는 제2장 차별금지의 각 생활영역에서도 고려되도록 하였다.

(7)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통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도록 하였다(제5조 제1항, 제2항). 또한 장애인에 관한 정보가 불이익하게 활용되어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장애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제5조 제3항).

(8) 차별금지가 되는 생활 영역은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 체육, 사법·행정·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시설, 건강권, 폭력이다(제2장 차별금지 제1절 - 제14절).

(9) 차별금지가 되는 각 생활영역인 14개의 각 절은 공통적으로 차별금지와 차별간주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금지 조항은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를 담고 있으며, 차별간주행위 조항은 장애인의 삶에 중대한 피해를 줄만큼 심각한 차별행위를 명시하여서 이 행위가 있을 시에는 바로 차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특히 고용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8조)와 장애인을 구별하여 행하는 의학적 검사금지를 규정하였다(제9조). 교육에도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였다(제13조).

(10) 본 법은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 발생하는 차별금지를 정하였다. “제3장 제1절 여성장애인”을 두어서 같은 일상이나 생활영역에서도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빈번하고 강도가 다르며, 다른 형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주의하도록 하였다.(제44조, 제45조)

모·부성권, 성, 가족 가정 시설, 건강권, 폭력의 각 절은 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차별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남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1) 본 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3장 제2절 장애아동”를 두었다. 특별히 장애아동이 차별되는 원인을 지적하여 금지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였다.(제46조, 제47조)

(12)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하였다(제48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인 9명으로 구성하되(제51조 제1항), 위원 중 3인 이상은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제51조 제2항)고 추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51조 제6항). 또한 위원 중 5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2인 이상은 여성장애인이어야 한다고(제51조 제5항)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판단이 조율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3) 위원회의 운영에는 국가기관과의 협의(제50조)조항을 두어서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제1항), 위원회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단체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정책적인 권고를 할 수 있고(제2항),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제3항).

(14) 위원회는 조사대상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0조). 또한 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시정권고(제81조)와 시정명령(제82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과도한 역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위계효과를 통하여 차별 예방과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악의에 의한 차별로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하한금액은 500만원으로 하였다. 악의의 추정은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차별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경우로 하였다(제94조).

(16)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해당행위가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하여서, 차별받았다고 진정한 장애인의 현실적인 불리함을 고려하였다.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목적, 성질, 태양, 조건 등을 고려하되, 그 필요성, 방법,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제95조).

(17) 단체소송제도를 두어서 장애인 개인을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단체의 정관이 정한 설립목적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 확인 및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체의 범위 및 요건, 절차 등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96조).

II-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항숙 의원 T/F안

1. 개정 이유

최근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 참여보장,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이동보장정책 및 자원조달 방안을 추가하여 동 위원회가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하도록 함.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변경,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개정 이유임.

한편 현재까지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에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장애인복지법 또한 이러한 과거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음.

또한 장애수당의 확대와 자립생활에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변화, 여성장애인의 권익 증진, 장애인 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 등 법 조항 개정의 구체적인 요건 또한 발생하여 장애인복지법을 대폭 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문제점

가. 재활 전문가 중심의 장애인복지

과거 장애인은 완전한 주체적 생활자로서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 받지 못하고 보호와 재활의 대상으로 인지되어 왔음. 이로 인해 장애인의 날은 재활의 날을 그대로 이름만 변경하여 실시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 주최 또한 비장애인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

또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가 배제된 채 비장애인 중심의 단체들이 장애인의 문제를 주도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음.

노동절은 노동자들에 의해, 경찰의 날은 경찰에 의해, 국군의 날은 군인들에 의해 준비되고 치러지며, 또한 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당사자들의 손의 의해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유독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사자 본인들이 아닌 재활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비장애인 재활전문가들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면 그들에 의해 재활된 장애인들에게 그 스스로의 결정권을 이양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혹은 아직도 장애인들의 역량이 부족하여 재활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것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수십 년간의 정책 방향이 실패했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그들이 장애인 문제를 주도하도록 할 수 없는 시기에 이르렀음.

따라서 더 이상 장애인의 삶에 대한 문제들이 당사자들의 손을 벗어나 재활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여 장애인들 손에 그들의 삶을 돌려줄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야 함.

나.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탈피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 10여 년간 제기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 가려는 노력들은 결국 또 하나의 시설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는 시설 중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었음. 즉, 또 하나의 대규모적인 시설을 탄생시킴으로써 재활 전문인력들 중심의 장애인복지 인력 풀을 형성하였고, 과거의 보호시설 역시 확대를 가져와 이름뿐인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를 고착화 시켜왔음.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막대한 정부 예산을 받으면서도 시설의 근대적인 운영 방식을 고집하여 시설의 사유화와 불투명한 행정 등 아직도 많은 사회적 문제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아직도 대상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이러한 시설 속에서 고착화 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시설 중심의 비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지원하는 자립생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환하여, 그동안 고착화된 환경적 요소에 의한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

다고 할 수 있음.

다. 장애 판정의 문제

2004년 말 현재 장애인 등록 인구는 160여 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판정 기준은 극히 의료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단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즉, 가짜 장애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의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장애 등급이 결정되는 제도적인 허점을 지니고 있음.

또한 장애 등급간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같은 등급간 유형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등급의 정확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음.

이 외에도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등급 간의 격차가 부정확하고 등급 내에서의 편차가 심해 장애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중증과 경증의 구분이 모호하고, 일반 상식선에서 장애인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조차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고 장애유형간의 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또한 새로이 추가되고 있는 장애 유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라. 장애연금의 도입 문제

흔히 장애연금이라 일컬어지는 장애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들에게만 지원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이나 빈곤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에 봉착해 있음.

그러나 국가 재정의 한계와 사회적 합의라는 두 가지 한계에 부딪치면서 소득보존이라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지속적으로 거부되어 왔음.

장애수당인 장애연금 도입이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장애인들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이러한 장애수당의 지급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재정상황을 고려한 장애수당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절대적 극빈의 문제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함.

마. 장애인 업무의 부처 이관 및 관련 조직의 재정비

과거 장애인 문제는 복지의 문제로 간주되어 오로지 복지부에서만 집행하였으나 이제는 장애인의 삶 전역에서 생애적으로 발생되고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에서 담당하여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즉,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건설교통부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정보통신부, 보조기기에 관한 지원은 산업자원부, 고용의 문제는 노동부, 교육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권의 문제는 문화관광부 등 전 부처에 걸친 장애인 문제가 정책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함.

따라서 각 부처 내에 장애인정책담당관 지정과 부처별 실무위원회 구성, 체육 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조직 정비 등 여러 면에서 정부 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음.

3. 주요 개정 방향

가. 장애수당(장애연금제도) 도입

현행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月 6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또한 중증 장애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장애아 부양수당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기여연금이나 수당과는 다른 개념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 급여 항목에 있어서 장애급여에 해당하는 사안임.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장애수당(무기여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수당 도입 방법에 있어서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60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소득세 면세 기준인 월 104만 5천원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 한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지급 항목을 이동수당 등 다섯 가지로 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였음. 즉, 이동수당은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6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정보접근수당은 시각장애인 1~4급과 언어·청각장애인 2~3급에게, 건강지원수당은 모든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월소득 104만 5천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의료보험료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요보호장애인 지원수당은 뇌병변장애인 1~2급, 정신지체장애인 1~3급, 발

달장애인 1~3급, 정신장애인 1~3급에게, 소득보존은 월소득 104만 5천원 이하의 장애인에게 국민연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음.

재정적 부담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비 3천억원과 지방비 3천억원 총 6천억원을 추가로 조달하여 시행하도록 기획하였으며,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1천억원 외에 추가 증액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급하든, 혹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원하든 관계 없이 추가 재정 확보 6천억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강화

먼저 장애인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기존의 장애인복지단체라는 용어를 장애인단체로 개칭함으로써 그동안 전문가집단과 애매모호한 개념적 갈등을 겪고 있던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이 장애인단체로 정의될 수 있도록 '복지'라는 용어를 제외시켰음.

또한 기존의 장애관련 정부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이 매년 4월 20일이었던 것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과 동일한 날로 변경함으로써, 과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임시이사회 날이자 재활의 날이 형식적으로 탈바꿈한 4월 20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일을 찾아 주었고, 또한 행사자체도 장애인들이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음.

그리고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어 모든 조직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참여하던 것을 장애인단체협의회로 개칭하여 순수한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들의 협의체로 전환하였음. 동법시행령에서 다루어질 문제라고는 하지만 장애인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회원을 장애인으로 하고 이사진의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또한 특수목적이나 이권을 위해 설립된 직능단체들은 배제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였음.

다. 자립생활에의 도입

그 동안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으로 되어있던 것을 장애인의 자

립생활로 전환하여, 활동보조인 및 동료상담원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자립생활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각종 프로그램들을 자립생활 영역에 편입함으로써 자립생활이 장애인복지의 골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장애인등록제의 전면 개편

현재 6등급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제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고, 또한 장애등급 결정 요소를 단지 의료적인 측면만이 아닌 교육적,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등록과 구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장애수당 및 각종 제도적 혜택에 있어서의 장애 정도와 물리적 여건 등에 따른 차별성을 반영하였음.

또한 장애판정에 있어서도 시·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장애판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위원회에서 장애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행정적으로 발급되던 장애인등록을 보다 체계화, 총체화 하였음.

그리고 중앙 차원의 장애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측면에서의 방향 설정 및 방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마.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의 운영

그동안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되어 있던 조직에서 체육 업무 이관에 따른 조직의 공동화를 막고 기존에 등한시되어 왔던 장애인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개칭하였음.

또한 이 조직의 업무에 있어서 체육업무를 제외시키고, 조사연구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 국립재활원에서 병원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이관하여 개발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조직 편제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음.

II-2.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화원의원T/F)

1. 무엇이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1989

년 12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때 현재의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규정하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관련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정책은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정책의 기초의 그늘에 가려 산업의 발달로 인한 사회구조변화와 의식의 변화 그리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걸맞게 변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아직까지 장애인관련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머물도록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처우된다면 장애인의 헌법적 기본권은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34조 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가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는 지금까지 "전문인력의 판단"이라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졌다. 이러한 원칙은 장애인정책시행에 있어 격리와 보호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다. 장애인은 이러한 원칙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은 통합된 사회에서 "일반적인 삶"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에 걸 맞는 인생을 꾸려나가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과 '참여'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던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상호배타주의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상호보완적 시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역량강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그리고 제한된 환경에서의 피동적 결정권에서 주체적 자기결정권으로의 전환 또한 전문가 집단위주의 하향식 정책에서 풀뿌리장애인의 욕구의 기반에 의한 상향식 정책으로의 전환 속에서 장애인관련법의 제·개정작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작업이다.

2.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문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종합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삼으면서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세부적인 법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기본권리보장 및 인권보장규범과 재활복지의 급부규범이 함께 망라되어 있지만 그 무게중심은 국가의 급부의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권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유권 및 정치권 등의 영역에서도 인권의 차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사회보장적 급부의 내용만을 담당하고, 장애인의 평등실현 및 각종 정책을 위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법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인권보장측면이 고려된 재활복지서비스관련법으로 보아야 하며, 주로 급부규범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복지법(사회보장법)으로의 성격으로만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념과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고 있다. 이념상으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추구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조치들과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거의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이념에 맞도록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나열하고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시적이며 실효성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정만을 할뿐이며 장애인의 기본권이 미이행되거나 정책적인 고려로 인해 불투명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무위원회가 근래에 상설화되어 있으나 장애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재적인 과제와 기능이 미미하여 장애인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의 평가와 대안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들이 모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 청구권, 환경권, 건강권 등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한국의 장애인이 기본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이 대부분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시혜적인 조치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편의증진법(정식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그리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있다. 그 외에 건축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장애인복지법이 관련 법률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기본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나열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배려'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사와 시행 그리고 각 관련부처 장애인관련 정책들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기구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가. 기본법 제정의 이유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의 정책적 접근은 보건·복지의 분야에서 협의의 관점으로만 시도를 하였고 현시점부터라도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며 생애주기별로 걸쳐있는 광의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광의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과 실행 그리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하여 장애인정책은 그동안 시혜와 동정의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장애인들의 복지 및 권리에 대한 욕구증가는 장애인들의 장애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우선 참여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책 시행, 각 부처별 직접적인 장애인관련 정책의 실시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상설전담 기구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 기본시책을 강구 또는 조취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기본시책의 자료 제공 및 시책의 개발 등의 연구 분야와 중증장애인의 재활연구 및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그리고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대상으로 사업 평가 등을 실시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장애인정책의 개발·수립에서부터 실시 그리고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그동안 복지증진과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주요업무인 장애인 체육분야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조직적인 리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장애인 전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성격 및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서비스법으로써 그 성격을 한정 지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복지뿐만 아닌 장애인의 인권, 노동, 교육, 문화, 정보접근, 이동 및 편의시설, 여성장애인의 지원, 국제협력 등 다양한 욕구와 이에 따른 책임부처의 기본시책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본법을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기본법의 주요 제정 방향

1) 장애인정책의 기본적 접근

현재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형식적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장애인관련 기본정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각 행정부처에서 보다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관련 행정부처에서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애인관련 담당자로 두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접근에서 가장 우선시 되며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전문가 중심의 재활적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정

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와 당사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설립목적 기능인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의견조정, 정책 이행여부의 감독과 평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으로 장애인 당사자 민간과 더불어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역할 및 심의 자문기구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장애인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1992년 4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48차 UN ESCAP 총회에서는 아태 장애인 10년을 선포하고 12가지의 행동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행동계획안 속에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위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여러 기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러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이러한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국가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200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설립이후 실질적으로 자원의 적절한 할당이나 관계부처의견을 조정할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하며 형식적인 회의와 탁상공론에 의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현행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할과 장애계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의 재편이 불가피 하다.

3)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운영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복지진흥과 연구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설립 운영해왔지만 최근 장애인의 체육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에 등한시되어 왔던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장애인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활성화하여 국가적 장애인 정책을

뒷받침할만한 하부구조의 마련을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한다.

한 이 개발원은 업무에 있어서 체육업무를 제외시키고, 조사·연구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미국, 일본등 복지선진국과 심지어 중국에서도 설치되어있는 재활의료, 재활보조기구 개발, 재활정책의 연구등 중증장애인의 재활연구과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각 유형과 원인별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등을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 부여

장애인복지법 제53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이 단순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이미 권익증진,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정책개발사업 및 장애인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영역과 역할 그리고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장애인복지단체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약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육성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이에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지원으로 단체의 시민사회적 활동과 함께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활용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단체들의 조세감면과 부가세 감면 그리고 재산에 대한 소득계산 및 특례적용, 수입관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지원은 그 활동의 기준과 역할 그리고 장애인권익 및 인권보장등을 위한 활동의 책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평가활동은 앞서 언급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5.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개정방향

1) 장애인의 참여보장

참여란 사회적인 진행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능력의 개발을 통한 공동의 작업과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참여는 사회통합, 그리고 자기결정(Selbstbestimmung) 또한 공동결정(Mitbestimmung), 일반화(Normalisierung), 기회의 평등성(Chancengleichheit)을 확보하는 통로이며, 목표이기도하다.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소위 하향식모델에 그 바탕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책의 합리적 시행'이라는 명목 하에 장애인의 실질적 욕구가 대부분 간과되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동권, 생존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장애계의 욕구는 많은 부분 무시되어져 왔다.

이러한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상향식 모델(Bottom-up-model)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향식 모델의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7조)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참여에 대한 보장은 구체적으로 장애인기본법에서 장애인위원회(3장),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24조)에서 강조되고 있다.

2) 중증장애인의 개념규정과 우선 지원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애인의 정의가 복지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주로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는 것에 비하여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체,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에 추가하여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노동)능력,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인

장애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향은 WHO의 ICF에 잘 반영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학적 모델이 중심축을 형성한 가운데 장애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장애인 개인의 사회참여부분에서의 측정지표 및 도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정의를 사회적 참여의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명시하였다. 특히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책시행에 있어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 개념 규정이 통용되고 있었던 오류를 수정하고자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전문가 주도의 하향식정책이 주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참여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장애인의 역량강화는 장애인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역량강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본 개정안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다.

3)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

자립생활 이론은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성은 인간 모두의 삶 자체가 복잡하고 유기적인 것처럼 장애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자립생활의 개념에 기인한다. 또한 자립생활의 기본정신은 하나의 규격이나 정형에 장애인을 맞추지 않고 개별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추구하며, 또한 자립생활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자립생활을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느냐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IL을 장애인의 인권회복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즉 의료, 직업, 교육권 등에서의 인권의 한 가지로 보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접근방법은 시민, 의식개혁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장애인도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존재로 동등한 참여와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 개선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장애인이 어렵게 사는 이유는 사회 환경(Social Environment)에 있다고 보고 사회 환경이 잘못되어 장애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의 지원

모델로서의 접근방법이 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자립생활을 명시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고자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및 활동보조비 지급,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별 재활서비스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재활의 연구,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4) 장애인의 역량강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역량강화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만 한다. "역량강화"는 스스로의 결정 속에서 자신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원들을 발견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지원을 의미하고,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며 타인과의 연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역량강화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자유재량권과 해결방법의 확대이다. 이 과정 가운데 최우선으로 어떻게 해야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 통제 그리고 자아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문제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공동으로 그 전망과 방법을 밝혀나가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진행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개발이 문제해결을 위한 주된 관심사로 된다.

본 개정안은 개인적 차원, 집단 및 조직의 차원 그리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방안과 장애인 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에의 접근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등 장애인정보접근 의무화 조항 신설하고 국가적인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비치 의무화하였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동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을 명시하였다. 또한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활동보조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사

회참여를 통한 역량강화를 유도하였다.

5) 처벌의 실효성 강화

그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혜택을 입고자하는 가짜장애인의 증가는 사회문제화 되었으며 일부 장애인관련정책의 축소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단체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Ⅲ. 장애인통합고용법(안) 제정취지(장향숙의원 T/F)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장애인고용정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함에 있어 단순한 소득의 원천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들은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접촉의 확대, 자아의식의 강화,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 등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 이동권과 접근권 등의 미비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경쟁을 해 나가기에 매우 큰 어려움을 갖는다. 또한 어느 나라이건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과선택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노동시장은 고용불안정이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실업상태에 빠질 위험이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고 실업기간이 더 길고 자주 해고되며 일단 해고가 되면 다시 고용되기 어렵고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특성을 갖는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의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장애인고용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여러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창출과 유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1990년이 되어서야

장애인의 노동문제를 다룬 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 확대와 안정을 목적으로 했던 1990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은 일정 수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시이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적립된 기금으로 법정 의무고용을 상회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고용 관련 제반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후 적지 않은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을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고용율은 향상되지 않은 채 계속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기대와 달리 전반적 장애인고용환경은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즉 1990년의 법은 당시 상황이 경증장애인도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한계로 인해 법 자체가 경증장애인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구비되지 못했으며 장애인을 고용시키거나 직업재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할 국가의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막연하게 명시함으로써 민간사업주에 대해 모범적 장애인고용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아울러 직업재활과정을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법률에 명시된 여러 제도들이 당시의 새로운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법 제정 당시의 의도와 달리 장애인고용환경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장애인고용은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의무고용율에 의존한 종전의 장애인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각종 다양한 적극적 지원 서비스의 확립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의 장애인고용정책이 수립되었다.

2000년 법률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먼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이 강조되었으며 직업재활과정 중시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직업재활전문요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 법률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고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중증장애인 개념이 부재하고 장애인차별 금지원칙을 위배한 사업주에 대한

차별 및 이행수단이 미비하며 고용의무제도의 합리적 조정, 즉 법정 의무고용율, 고용의무사업주 범위, 부담금의 수준 및 차등화, 적용제외율의 점차적 폐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 및 적용제외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와 업무의 재조정, 전문인력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이 요구되었다

1990년 법 제정, 2000년 그리고 2004년의 법 개정 등 여러 번의 법개정과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확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다했으나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2004년 7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03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율은 법적 의무고용율인 2% 절반을 겨우 상회한 1.18%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율은 1.08%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4년 12월 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율은 2.04%로 정부부문의 경우 법 제정 15년 만에 의무고용율을 처음으로 달성하였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장애인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그때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통합고용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대적 책임을 갖는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의 노동권보장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편견과 차별 없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시장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통합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통합고용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2. 그동안의 문제점

1) 분리된 노동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노동정책은 비장애인과 상당히 분리되어 있음. 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념에도 위배되며 국가 차원의 노동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어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분리된 체계는 장애인의 통합고용을 위한 많은 사회적 자원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으며 장애인이 개인이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어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을 살린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2) 국가책임의 회피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이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지금까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장애인 노동정책을 운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고용율 미달 시 부담금 납부의 책임을 갖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4년 연말을 기준으로 고용의무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법정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달성하였으나 이 경우도 적용제외를 반영할 경우 실제의 장애인고용율은 매우 낮아지는데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반증함

3) 장애인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편중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특성을 갖는데 일부 장애인의 경우 국가, 사회 혹은 기업의 아무런 지원 없이 이러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고용기회를 갖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이런 현실 속에서 현재 고용장려금 외에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책 미비로 인해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약화가 초래됨. 또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제도가 고용장려금 이외에 별달리 없어 장애인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또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은 일반노동시장에서 고요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고요의 기회를 갖는다 해도 주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되는 등 고용의 어려움 및 일부 시설로의 고용편중이 야기되고 있음

4) 고용 상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 미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특성이 장애인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취약함

현재 법률에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이직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며 벌칙부과 등 이행수단 혹은 제재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차별금지 관

련 규정의 보완 강화가 시급함

5) 고용의무제도의 합리적 조정 노력 미흡

우리나라의 경우 할당고용제를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1990년 법제정 이후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사항에 대한 개선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예를 들면 법정 의무고용율의 경우 1993년 이래 2%로서 한번도 조정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의무사업주의 기준은 2004년 법개정을 통해 기존 상시근로 300이상 사업주에서 50인으로 처음으로 조정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면제되고 있으며 민간 사업주에 대한 적용제외율의 폐지 역시 최근에서야 이루어 졌고 부담금 수준 역시 최저임금 인상율 등에 연계하여 인상되는 등 고용의무제도 기본에 대한 합리적 조정 노력이 미흡함

6) 정책추진 인프라(전달체계, 자원, 통계 등) 구축 미흡

장애인고용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인 인프라 구축 즉 전달체계, 자원 혹은 통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들에 관한 일관된 시스템의 구축이 취약함. 특히 2000년 법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직업재활사업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전달체계 상의 혼선 및 효율성과 효과성에서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서비스 전달기관 간 통합적 연계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업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지식·통계·전문인력 등의 정책추진 인프라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제정방향

1) 통합고용의 강조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고용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장애인의 생존권 및 노동권의 보장,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천 즉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한 정부·기업·장애인 및 기타 관련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공동실천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장애인들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고용이 가능토록 제반 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정상화의 실현과 고용의 평등추구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존의 “장애인고용” 이란 용어를 지양하고 “통합고용” 이란 용어로 대체·사용하고자 함

2) 국가의 책임 강화 및 정책의 전문화·체계화 :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장애인의 노동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전문화, 체계화를 추진

현재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서 벗어나 국가가 장애인의 통합고용을 위한 사업의 모든 인적, 물적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정책의 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현재 직업재활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효율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전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함

모든 장애인의 노동기회 균등이라 함은 노동성이 있거나 의지가 있는 장애인이 법률에서 적극 지원하고 노동의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노동적 관점” 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노동의 영역에 포섭되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복지적 관점” 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통합고용을 실현하는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고자 함을 의미함

3) 노동시장에서의 통합고용 기반 마련 : 사회통합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이 시장으로 통합고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 제거를 통해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는 통합고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경쟁시장에서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에 시장이 스스로 역할을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의미함. 구체적 대안으로

- 고용의무 불이행 시 정부입찰자격 제한
- 장애인고용정도에 따른 정부입찰 시 인센티브 부여(수의계약 체결권 부여 등)

- 장애인고용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부여(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등)
- 장애인고용에 따른 공적자금 융자의 특혜 부여
- 의무고용율의 적용에 있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업 집단 혹은 동일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에 대한 의무고용율 산정방식의 특례 마련
-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중 일부 사업 타 기관으로의 이관
- 직능별 할당제를 통한 유보고용 직종 확대
- 국민연금수령연령의 하향조정(선원이나 광부와 같은 연령으로)
- 실업급여 수령기간의 연장(현행 6개월을 9개월로)
- 장애인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 공제규모 확대
- 고용상태에서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구축
- 대학교육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여 지원 등

4) 고용 상 차별에 대한 제재조치 미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임. 고용차별금지에서는 고용관계의 모든 영역(예를 들어 채용에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까지)을 차별금지의 대상영역으로 포괄하여야 함. 아울러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련영역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의 대상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즉 직업교육·훈련이나 직업지도·소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장애인대표 등의 영역도 포함되어야 함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 및 제재조치의 명문화임. 차별금지를 실제로 예방하고 차별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매우 중요함

5) 고용의무제도의 합리적 조정

고용의무제도의 개선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위해 법정 의무고용율의 상향조정,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해 민간사업주 보다 높은 의무고용율 부과, 고용의무사업주 범위의 지속적 확대, 부담금 수준의 현실화,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및 적용제외 폐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2배수 인정(더블카운트)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6)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사회 역할이 증대되고 직업재활수행기관의 증가로 인해 다양하고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정책수행을 위한 원활한 자원분배 및 사업수행을 위해 인프라 구축 필요함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 사이에서 장애인고용 관련 서비스의 조정 및 관련 업무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의 작동자로서의 기능 추가가 시급함

향후 공단은 관련 기관의 업무지원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의 기관에 대해 업무지원과 동시에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문제를 공단업무로 일원화 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함

4. 법안의 주요내용

1) 법안 명칭 변경 : 장애인통합고용법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으나 현재의 법안 명칭이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이라는 상호 대등하지 않은 수준의 용어가 결합되는 내포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의 사회통합적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통합고용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자 함

2) 국고 부담의 강화

2005년 법개정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부담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할 수 있다” 혹은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라는 임의적 규정에 머물고 있어 국가책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성 있음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장치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책임을 실현하고자 함

3) 장애차별금지 강화 및 처벌규정 강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직장복귀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통합고용위원회에 있어서 장애차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부여, 장애차별 시 처벌의 강화 등 차별금지를 강화하고자 함

4) 중증장애인 개념 재정립 및 준중증장애인 개념의 도입

현행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어 현재 지체장애인 중 상지장애인 3급은 중증장애인으로 간주받고 있으나 실제로 고용에 있어 더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 4급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특성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재조정함으로써 장애인 통합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업적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관련 연구자들이 외국의 직업능력평가지표를 장애판정기준으로 잘못 이해하는 오류가 있었고 직무별, 직능별,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직업적 장애판정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상대적인 개념이 강해 장애정도 혹은 장애유형에 따라 인적, 물적 지원을 차별화하는 기준의 설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그러므로 현실적 대안으로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에서의 장애판정기준의 재조정을 전제로 장애인복지법 등의 장애판정기준을 활용하되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증과 경증을 새로이 분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가칭 “준중증장애인”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 있음 (법안설명자료 참조)

5) 장애인근로자

현행 법률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로 규정하여 지급되는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장애인고용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것이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별개로 간주하는 모호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 있음

그러므로 장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임금의 수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재활차원의 보호작업이나 작업활동과 통합고용에 의한 근로활동을 구분함

6) 장애인통합고용사업

“장애인통합고용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에서 직업지도(직업능력평가 외), 취업, 취업알선을 제외한 장애인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후적응지도와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등 통합고용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함

7) 통합고용사업장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고용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여성중증장애인은 1.5명, 남성중증장애인과 여성경증장애인은 1.25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 상시근로자의 2% 이상 10%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장애인근로사업장
- 상시근로자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를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장애인중심사업장으로 규정함

8) 행정통합과 시장의 통합고용 유인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방안으로서 의무고용 불이행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정부입찰자격 제한 고려, 자격제한의 방법으로 입찰가 100억원 이상의 계약에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30억원 이하의 계약에는 장애인중심사업장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 또한 특정한 분야 혹은 10억원 미만의 입찰에는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에 수의계약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혜 조치 마련.

의무고용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 면제는 물론 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세제혜택을 주며 정부입찰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종전의 부담금과 장려금을 통한 단순한 고용유인책에서 벗어나 사업주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 세제지원의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의 감면 등을 고려함. 또한 고용정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하여 장애인을 다소 고용하면 지원을 크게 부여하는 연동제(sliding system)를 실시

장애인고용에 따른 공적자금 융자의 특혜를 부여하여 공적자금투입 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체부터 지원하거나 특별융자 시 장애인고용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하는 방안도 고려

의무고용율의 적용에 있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업집단 혹은 동일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에 대한 의무고용을 산정방식 마련. 현재 각 사업장 단위로 분류하여 의무고용율을 산정하고 있으나 향후 기업집단이나 동일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적으로 고용의무인원을 산정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집단이나 지주회사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

고용부담금의 징수, 고용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동일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에 대해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이나 고용,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통합고용사업의 수행에 타 공적자금의 활용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9) 장애인통합고용지원시설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관련 지원시설이 사업의 수행을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는데 반하여 본 장애인통합고용지원시설은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의 배치,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구조를 가짐

“장애인통합고용지원시설” : 장애인의 통합고용을 위한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통합고용공단이 선정, 감독,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직업능력평가시설 : 현행 장애인직업능력평가센터로 하되, 장애종류와 권역별 안배를 고려하고 고용안정센터, 산업인력관리공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평가결과가 현실적인 장애인 구직자 및 훈련생의 고용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시설 : 직업훈련시설이 아님. 고용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환경적 조성을 돕는 시설로 수화통역, 점서 및 녹음서 제공, 고용지원인력 파견, 관리, 각종 편의시설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위의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기관, 기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중, 노동부 장관이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제공을 위한 공간 및 관련 장비의 확보 수준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슈퍼비전 및 관리, 감독을 받으며 운영되도록 함

10) 직업능력개발

기존의 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적용받도록 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지원,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단이 주도하고 지사에서 관리,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1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현재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과 관련하여 우대조치가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어 실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함

세제지원을 포함 특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방안, 장애인비율을 통한 특혜 조치의 차등화 등 실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2) 지원고용

기존의 지원고용이 전문가에 의한 업무지도적 성격이 강하여 정신지체인 위주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원의 내용에서도 수화통역서비스 등 일부의 장애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향후 확대된 고용지원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본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함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화통역, 대독서비스를 지원하고 무상지원장비를 현실화, 체계화하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의 근로지원자를 배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작업환경과 근로지원을 지원함.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내부장애인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의무실 설치 등을 지원함.

이에 따라 지원고용에 의해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던 인력은 보건복지부가 그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기존 전문요원제도를 정비하여 통합고용전문요원제도를 신설함.

13) 의무고용율

의무고용율은 법적 장애영역의 확대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방식 즉 법률에 의무고용율을 규정하는 고정비율제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고용율을 규정하는 연동제로의 전환을 고려, 연동제로 전환할 경우 최저하한선을 장애출현율의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의무인원을 직위별로 균일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통합고용위원회에 연간 통합고용계획을 제출 심의를 받도록 하며 연간계획에 따른 이행정도에 따라 익년의 통합고용계획에 개선사항을 강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합고용위원회에 부여함

민간의 경우 국가와 비율은 동일하게 운영하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과의 연계고용제를 적용함. 즉, 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중

심사업장에 생산품, 서비스 등을 도급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연계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업집단 혹은 동일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에 대한 고용의무인원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집단 별, 지주회사별로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고용의무인원을 산정하게 함. 또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에 의해 지정되는 30대 기업의 고용의무인원을 통합고용위원회에서 정하고 특별관리 하도록 하며 수주, 하청 등에 의한 연계고용을 인정함

또한 의무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에 장애인이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 고용인원의 가산제 실시, 즉, 여성중증장애인이 일정기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1명이 아니라 1.5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함

14)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부담금의 액수는 현행을 유지하되 징수업무의 합리적 운영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함.

현재 무기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고용장려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지급업무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함.

15) 장애인통합고용공단

원활한 통합고용사업의 전개와 통합고용사업지원시설의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 및 기능의 변화 추진

주요사업은 통합고용사업지원시설의 관리 및 감독, 슈퍼비전 제공, 통합고용과 관련한 조사, 연구, 통합고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가양성 및 보수교육, 고용지원사업의 수행 등을 실시함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과 연계하여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생활기록부, 각종 검사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관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공단으로 데이터를 이관하여 공단이 장애인 개인의 통합고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마련

16) 장애인통합고용위원회

통합고용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본 법안에서는 국무총리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통합고용계획을 검토, 시정을 요구하며, 통합고용실태를 감사하고 의무고용을 산정방식의 특례에 대한 고용의무인원을 심의, 의결함

또한 앞서 언급한 각종 세제혜택이나 우선권부여, 입찰자격 제한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통합고용정책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입법활동을 전개함

17) 장애인통합고용기금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통합고용기금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일정 수준의 자원 보유를 위해 용도를 대폭 제한함. 특히 보호고용과 통합고용을 구분하고 장애인이 그 의지에 따라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원되는 당해 기금지출액의 9분의 2를 중단함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함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장애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지원
- 장애인근로자지원 대출금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의 대출금
- 기타 통합고용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인적 비용을 제외한 실질 사업비
- 기타 통합고용위원회가 사용하기로 의결한 통합고용사업

18) 경제단체 등의 협력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기업 혹은 경제단체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기관, 지자체, 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만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과 협조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장애인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협조를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사업주, 국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9) 특정영역 및 시설에 대한 우선권 부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가 유일한 유보고용직종임. 또한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 신문판매대의 분양에 장애인이 일부 우선권을 가짐

이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고용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특히 추후 신규 관리되는 업종, 직무 등에 대한 자격, 면허 부여에 있어 장애인에게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하는 제도를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이렇게 할당된 업종 혹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직업능력개발 혹은 직업훈련과정으로 마련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의 도덕적 회의를 막고 할당제가 건전한 장애인통합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질문 1) 장애인교육권이 부각되며 법개정 움직임도 있는데, 장애인의무교육이 강제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1) 교육권연대에서 싸우고 있는데 현행 교육법에 있는 유예기간 때문이다. 법에 학교교육에 대상자가 된 유아기때 부모가 학교를 안보내도 되는 이유 중에 장애등 심신등의 이유로라는 조항이 있다. 이조항을 삭제해야하고, 학교를 안가면 순회교육이라도 받게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속에 교육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거부하게 되면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교육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고 제한적인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렇지않다면 현행법의 조항을 삭제해야한다. 만일 전염병등의 이유로 격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질문 2) 무기여장애연금법에 의한 지급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답변 2) 현재 논의 중인 3개의 안마다 다르지만, 연금제도는 어렵고 나라마다 다르다. 현실에 맞게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 영국은 18세 이하면 교육법에 의해, 60세까지는 연금에서, 60세이상부터는 노인요양제도에서 받는다. 일본은 무기여연금이며, 수당 종류가 많다. 미국은 등급은 없고, 사는 생활, 소득유형등을 판정하여 금액이나온다. 우리나라에 맞게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항숙의원안에는 60세미만 중 소득세 면세기준 국민, 차상위, 차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차등지급한다.

월 104만5천원 정도의 개인소득이 기준인데, 그이상은 일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부터 실시하며 60세 이상은 노인연금, 요양보험에서 받는다.

수당은 이동수당, 정보접근수당, 건강지원수당, 요보호장애인수당, 소득보장수당 다섯가지 종류로 액수도 정해져있다. 요보호수당 10만원 이동수당은 5만원으로 기준은 약하다. 그러나 뇌병변 1급같은 경우 요보호수당, 이동수당, 건강지원수당(보험료대납, 연금대납) 국가의 세금으로 받아 낸다는 것이다. 월 27만원정도 된다. 5만원~3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적게받는 대신 30만~50만명이 해당된다.

질문 3) 서울시에서 2005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행되고 있지 않다. 법조항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변 3)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은 공무원이 만든다. 시행령이 나오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된다. 시행령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별표1, 2, 3등의 기준이 있다. 이 경우느느 아직 시행령이 안만들어졌다. 5년만에 나온 경우도 있듯이, 시행령이 없으면 집행이 안된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시행령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싸워야한다. 시행령에도 우리의 요구가 들어가야한다. 시행령 제정 공고때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거나, 그 전부터 작업이 필요하다. 엘리베이터도 예산문제이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프트 설치 계약을 했다. 돈이 없기때문이다. 돈이 없어도 해놓으면 고칠 수없 기때문에, 똑같아진다. 서울시의 의지가 약하다. 외국은 교통위원회등에 장애인이 참여한다. 여기서 논의하고 수정된다. 결국 싸워야한다.

질문 4)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을 가졌을 때 바로 정지가 되면 취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노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방법은

답변 4) 국민기초수급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 장애인의 소득을 따지는게 아니고 부모, 형제 자산까지 따진다. 수급자가 되어야 생활비를 받는데, 부모가 있거나 형제가 있으면 안된다. 해당자가 엄청늘어나게 되지만, 부모형제에게 의지하게끔 넘기는 정책이 된다. 결국 자립생활이 안되고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다. 개인의 기준으로 정해야하며, 수급권 액수를 늘이면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일을 했을 때 탈락시키지 않고 액수를 조정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해야한다. 수급권자의 20프로가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목소리를 내야한다.

질문 5) 현재 시각장애인 침술이 금지되어 있다. 부활될 수 있을까?

답변 5) 시각장애인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변호사가 되면 속기사가 국가비용으로 나오고, 교수가 되면 활동보조가 된다. 자기비용이 아니라 고용한 기관에서 책임지게 법이 되어있다. 시각장애인직종이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안마, 침술, 역술, 텔레마케터, 다른 직종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직종제한이 되어있고 국가정책이 없다. 결국 한쪽으로만 몰린다. 또 특정의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밀어줄 필요도 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하는 경우 재활용같은부분은 다른 곳에서 손을 못대게 독점권을 준다. 민간기업에서는 능력차이가 나면 뽑지않게 된다. 침술같은 경우는 한의사협회와 부딪힌다. 눈으로 진단해야하는데 시각장애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감각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직종이 다양화되면 한 직종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때론 매달리고 싸우고 이권싸움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다.

<<토론주제>>

• 장애인관련하여 만들고 싶은법

2.6모듬
1. 시각장애인 직업 보호를 위한 침구사법 제정 2. 희귀 난치성 지원 확대 및 중증 장애인 가정 지원법 (간병, 활동보조) 3.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 확대 지원법과 정문병원 설치법 4. 장애인 정보 지원법 5. 장애인 보장구 지원법 6. 장애인 주거 지원법
2.6모듬
* IL(PAS) : 센터설립, 지원 ~ (동~) * 장애인 콜택시 전국망 지원법 *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지원법 * 장애인 직업코치(적응하도록 지원) 재정 * 장애인 편의주택 지원법 - APT할당 (XX%) * 재택교육 지원법(개별교육) * 장애인 가정폭력특별법 * 여행지원법

5 동	7모듬
* 중증 장애인 연금법 - 수급자가 아닌 중증 장애인들도 연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 현재는 자신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므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본인이 호주가 되어야 함 * 희귀병에 대한 지원 역시 보건소에 등록된 병들만 인정되고 있음. 장애등급 판정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함. 특히 희귀난치병에 관해서는 장애등급 판정을 더욱 세분화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해야 함. 또한 정부지원 역시 지금보다 더 현실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등록된 사람 한에서 지원) * 연골무릎 장애인들에 대해서 영아기에 성장판 수술 및 치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끔 하고 싶음 (의료혜택X) * 등급이 높은 장애인은 GpOR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에 대해 더 개선시키고 싶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모아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 더욱 더 장애인에게 대해 잘 봐야 한다. * 버스를 타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빠른 시행 필요)	* 우선은 존재하는 법부터 우선 시행 되어야 할 것. * 장애인 "이동권" 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할 듯 (교육권, 노동권 모두 연결되는 부분) * 노동권이 좀 더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 생존권, 자기실현) * 서울에서 우선 시행된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 제도가 지방으로도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 장애인 화장실도 남, 여 구분이 필요하다. (실질적 이용, 건물 편의시설) * 활동 보조인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고 그 급여도 국가에서 줬으면 좋겠다.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법적 보장) * 여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좀더 실정에 맞도록 변화 되어야 한다.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필요)

8 등

<만들고 싶은 법>

- ① 저소득자 수급자에게만 주택 무료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도 무료로 임대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주택 내에서 이동권 편리 (ex. 일본천정레일)
- ③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권자의 자격 부여 되어야 한다. (수급권자의 기준 조정 필요)
- ④ 보조금, 활동보조원, 문화생활의 지속적인 지원
- ⑤ 외출 시 교통이용 불편 - 요금과다사용 (지상버스 확대, 교통비의 지원)

<지금보다 더 편하게>

About 장애인 이동권

- 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무임승차권 - 비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T-카드 처럼
- ② 있으면 뭘 해?
 -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행원활
 - 장애인 콜택시 운행 제대로
 - 저상버스노선도 모르는데.

* 전동 휠체어 법

- 전동 휠체어 전부 지원과 수리비 지원

* 사회성 향상 지원법

-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보장구 지원법

- 청각 장애인 보청기 지원..

* 장애인 개인 환경법

-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ex. 교육, 직업, 주택 등.. 일정기간을 두고 선택자가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

2005년 제5기 장애인청년학교 자료집

이념과 행동의 전환점

|발행인| 위문숙

|발행처| 서울DPI

|연락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전화 02.447.0277·팩스02.447.0276

www.dpiseoul.or.kr

|인쇄| (주)해든디앤피(Tel.3272-0003)